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UNCITRAL Working Group I 소규모 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노혁준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UNCITRAL Working Group I 소규모
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Trends and Perspectives of Legal Issues in a Global Context
- Focused on the Issue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UNCITRAL Working Group I -

연구자 : 노혁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HO, Hyeok-Joon

2018. 7. 15.

연 구 진

연구책임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의회원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을 포함하는 소규모기업은 국내총생산, 고용 등 나라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경우 경제발전은 이러한 소규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소규모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 규제적,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CITRAL 제1분과위원회는 특히 상업등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작업을 진행해왔다. 제도권 외에서 운영되던 기업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상업등기를 합리화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연구는 최근 상업등기에 관한 입법지침안 논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제1분과위원회는 최근 54개 지침안 초안과 관련 주석의 최종 독회를 마쳤다. 몇 가지 추가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위 입법지침안 초안은 향후 상업등기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위 초안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정부 및 학계에 상업등기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II.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먼저 이른바 포괄문서인 WP110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소규모기업을 다루는 제1분과위원회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는 국제경제에서 소규모기업의 중요성, 소규모기업의 개념과 특성,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 문서의 분석을 통해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도입배경과 함께 소규모기업을 제도권 외에서 제도권 내로 옮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입법지침안 초안은 54개의 권고안과 237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부록에도 3개의 권고안과 16개의 문단이 있다. 위 권고안들은 ① 상업등기청의 목적, ②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 ③ 상업등기청의 운용, ④ 사업의 등기, ⑤ 등기 이후의 절차, ⑥ 접근성 및 정보공유, ⑦ 수수료, ⑧ 책임 및 제재, ⑨ 등기폐쇄, ⑩ 기록보존 등 열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권고안의 조문 자체를 번역하고 위 문단의 주석 중 중요한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 일단 UNCITRAL 본회의에서 통과된 입법지침은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전세계적인 모범실무로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법원 주관하에 체계적인 상업등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에 바탕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실무를 발전시켜 왔다. 나아가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심이 되어 회사설립등기, 세무상 사업자 등록, 4대보험을 인터넷으로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다만 UNCITRAL 입법지침을 반영하여 다음 몇 가지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지침안의 윈스톱 샵은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한 것인바, 우리나라의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 개인상인, 다수의 사원 및 주주가 있는 기업, 자본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지침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고유 등기번호 시스템을 도입

하여 상업등기, 세무상 사업자등록, 4대보험 등록 등에 하나의 등기/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등기관련 수수료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III. 기대효과

- 이 연구는 UNCITRAL의 논의 내용 및 입법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UNCITRAL의 규범형성 과정 및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가 향후 UNCITRAL 회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UNCITRAL 차원의 입법시 우리 상황 및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국내의 입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국제회의 및 워크샵에서 나타나는 비교법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전문가들이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 법제에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변화 및 수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국제연합 상거래법 위원회, 소규모기업, 상업등기, 원스톱 샵, 고유 등기번호, 제도권 경제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account for major part in any country’s economy in terms of GDP, employment, etc. Especially the economic growth of a developing country is deeply dependent upon MSMEs. Like other countries, the role and importance of MSMEs are obvious in Korea.
-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the performance of MSMEs is reportedly faced with economic, regulatory and financial barriers. Among others, the UNCITRAL WGI has reviewed business registration reform. In order to encourage entrepreneurs to operate their business in the legally regulated economy, States need to take steps to rationalized and streamline their system of business registration.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issues raised on recent legislative guide on business registration. WGI recently completed its final reading on 54 recommendations and accompanied paragraphs. While some minor further changes are expected, the guidelines shall operate a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regulating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The analysis on the discussions in the UNCITRAL would give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a some insights, especially on business registration reform.

II. Major Content

- This research starts with review on overarching document (WP110) defining the mandate of WGI on MSMEs. This document covers the importance of MSMEs in the global economy, the concept and nature of MSMEs, the way to creating sound business environment for all business. Through analysis on this paper, one can better understand the backdrop of the legislative guide on business registration and the importance of MSMEs' transition from extralegal economy to legally regulated economy.

- The draft legislative guide comprises 54 recommendations and 237 paragraphs. Additionally, it also has the Annex that has three recommendations and 16 paragraphs. The recommendations deal with ① 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y; ②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y; ③ 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y; ④ registration of a business; ⑤ post-registration; ⑥ accessibility and information-sharing; ⑦ fee; ⑧ liability and sanctions; ⑨ deregistration and ⑩ preservation of records. This research made detailed interpretation on the recommendations themselves and analyzed major points of the commentaries accompanied.

- Once approved by the plenary meeting of UNCITRAL, the legislative guide, while not mandatory, shall be accepted as international best practice. Korea has well-organized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supervised by the Supreme Court and has developed efficient and logical practice. Further,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operated the internet-based simplified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which also covers tax registration and social

security registration. However, the legislative guide sheds some lights on additional development for business friendly surroundings in Korea as follows: under the one-stop shop approach by the legislative guide, the Korean one-stop shop needs to broaden its boundary including sole entrepreneurs and enterprises with more paid-in capital or member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adopt the unique identifier which is available for all governmental agencies including business registries, tax authorities and social securities authorities; and the fee system on business registration and public access to registered information should be revisited

III. Expected Effects

- This research, by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legislative initiative and process, will help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for legislation in the UNCITRAL and its main concern.
- Based upon the analysis, the Korean delegates may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following sessions and insert the provisions necessary for Korea into the legislative guide or model law of the UNCITRAL.
- This research will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legislation. From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workshop and conference, this research will help legal professionals to be updated with current trend in MSMEs regulations and to bring in positive change or revision to our legal system.

KLRI

- ▶ **Key Words** : UNCITRAL, MSMEs(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usiness registration, One-stop shop, Unique identifier, Legally regulated economy

목차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UNCITRAL Working Group I
소규모 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5
Abstract	9

I 서론 / 15

1. 제1분과위원회의 경과	17
2. 연구의 방향	19

II 제1분과위원회 논의의 경과 / 21

1. 2015년 회의	23
2. 2016년 회의	24
3. 2017년 회의	27
4. 2018년 회의 - 상반기 회의(2018. 3)	29

III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 WP110를 중심으로 / 31

1. UNCITRAL과 기업법제	34
2. 소규모기업의 의의	36
3. 제도권 외 경제(extralegal economy)	39
4. 제도권 경제 내 소규모기업 운영을 단순하고 바람직하게 함	42

IV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내용: WP109를 중심으로 / 51

1. 논의의 방향	53
2. 용어의 정의	54
3. 제1장 상업등기청의 목적(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y):	57

목차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UNCITRAL Working Group I
 소규모 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4. 제2장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y) 60
- 5. 제3장 상업등기청의 운용(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y) 66
- 6. 제4장 사업의 등기(Registration of Business) 77
- 7. 제5장 등기 이후의 절차(Post Registration) 86
- 8. 제6장 접근성 및 정보 공유(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 89
- 9. 제7장 수수료(Fee) 96
- 10. 제8장 책임 및 제재(Liability and Sanction) 99
- 11. 제9장 등기폐쇄(Deregistration) 101
- 12. 제10장 기록보존(Preservation of Records) 104

V 주요쟁점과 시사점 / 107

- 1. 윈스톱 샵 110
- 2. 고유 등기번호 116
- 3. 필수적 등기사항 118
- 4. 수수료 121

VI 관련문제: UNCITRAL 유한책임조직에 관한 입법지침안 / 127

VII 결 론 / 131

- 참고문헌 137

- [첨부자료] 입법지침안 조문 등 정리 143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 서론

1. 제1분과위원회의 경과
2. 연구의 방향

I

서론

1. 제1분과위원회의 경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의 제1분과위원회(Working Group 1)는 2014년 2월부터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을 포괄한 소규모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다.¹⁾ 필자는 2014년 하반기에 “소규모기업법제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는 UNCITRAL에서 특히 소규모기업법제를 다루게 된 배경, 소규모기업법제의 주요 쟁점 및 초기 논의가 담겨 있다. 이 글은 위 분석 이후 2018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매년 두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제1분과위원회의 논의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분과위원회 논의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어느 것이나 각국의 합의도출이 어려운 모델법 보다는 탄력성이 높은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첫 번째는 ‘상업등기(business registration)’²⁾ 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이다. 이에 관한 기초 보고서는 2014. 11. 사무국이 제23차 분과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상업등기의 모범실무(Best practices in business registration)”³⁾이다. 상업등기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

1) 노혁준, UNCITRAL의 상업등기 입법지침 논의와 그 시사점, 글로벌 이슈브리프 제1호, 2면(2018.6)

2) 이를 ‘사업등록’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후술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에 비추어 상업등기 개념에 가장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상업등기’로 번역하기로 한다.

3) A/CN.9/WG.1/WP.85

쟁점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15. 10. 제25차 회의에 제출된 “상업등기의 주요원칙(Key principles of business registration)”⁴⁾을 통해서이다. 부속서류를 포함 약 70페이지에 걸쳐 상업등기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후 논의의 기초가 되었다. 사무국이 상업등기에 관한 지침 초안을 제출한 것은 2016. 4. 제26차 회의에서였다. “상업등기의 주요원칙에 관한 권고 초안(Draft recommendations on key principles of business registration)”⁵⁾은 위 “상업등기의 주요원칙”에 관한 논의에 터잡아 마련된 57개의 입법지침 조문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후 이어지는 조문안 논의의 바탕이 되었다. 당시에는 총설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가 개략적으로 검토되었다. 이후 제28, 29, 30차 회의에서는 입법지침 조문안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제28차 회의에 위 최초안의 수정본⁶⁾이 제출되었는데, 상업등기의 주요기능에 관한 제9조 및 개념정의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조문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제29차 회의에는 저번 회의의 합의 사항을 반영한 재수정본⁷⁾을 두고 모든 조문들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있었다. 제30차 회의에서는 조문안 추가수정본⁸⁾에 대한 최종 독회(final reading)가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는 ‘단순화된 사업조직(simplified business entity)’ 법제 도입 부분이다. 이미 각국에 존재하는 각종 회사형태에서 더 나아가, UNCITRAL 차원에서 쉽고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유한책임 기업조직형태를 법제화하겠다는 시도이다. 이에 관한 기초적 보고서는 사무국이 2014. 11. 제23차 회의에 제출한 “설립 단순화에 관한 법적 쟁점(Legal questions surrounding the simplification of incorporation)”⁹⁾, “1인 회사에 관한 모델법안(Draft model law on a single-member business entity)”¹⁰⁾이다. 2015. 4. 제24차 회의에는 “단순화된 사업

4) A/CN.9/WG.1/WP.93 및 그 부속서류(A/CN.9/WG.1/WP.93/Add.1 & Add.2).

5) A/CN.9/WG.1/WP.96 및 A/CN.9/WG.1/WP.96/Add.1

6) A/CN.9/WG.1/WP.101

7) A/CN.9/WG.1/WP.106

8) A/CN.9/WG.1/WP.109

9) A/CN.9/WG.1/WP.86

10) A/CN.9/WG.1/WP.86/Add.1

조직에 관한 모델법안(Draft model law on a simplified business entity)¹¹⁾이 제출되었고 조직의 본질, 법인격, 유한책임, 조직의 명칭 등 총설적인 내용이 검토되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델법이 아니라 입법지침 도입으로 방향이 잡힘에 따라 위 모델법안의 형태를 입법지침안으로 바꾸어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5. 10. 제25차 회의에서는 사업 조직의 운영 구조, 기업구조조정 및 해산, 청산 등이, 2016. 4. 제26차 회의에서는 지분, 출자, 총회 등이 검토되었다. 포괄적인 입법지침안이 다시 제시된 것은 2016. 10. 제27차 회의에서였다. 사무국은 “UNCITRAL 유한책임조직에 관한 입법지침안(Draft Legislative Guide on an UNCITRAL Limited Liability Organization)¹²⁾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총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국 법제와 무관한(이른바 자족적인) 별도의 조직형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조직설립의 간이성과 유한책임 보장에 주안을 두고 있다. 제27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조직이 갖추어야 할 법적 구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되었다. 제28차 회의부터는 일단 위 상업등기 법제개선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이 두어지게 되어 일단 추가 논의가 보류된 상태이다.

2. 연구의 방향

제1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 두 가지 중 현재 구체적 성과에 이른 것은 ‘상업등기’ 제도 개선의 부분이다. 이미 최종 독회까지 마무리되었다. 반면 ‘UNCITRAL 유한책임조직 (UNLLO)’에 관한 입법지침은 아직 상당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에 초점을 맞추고, UNCITRAL 유한책임 조직(UNLLO)에 관하여는 간단히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의 서술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15년 이래 지금까지 제1분과 위원회에서 소규모기업 법제에 관해 논의한 경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1) A/CN.9/WG.1/WP.89

12) A/CN.9/WG.1/WP.99와 A/CN.9/WG.1/WP.99/Add.1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을 다룬다. 실제 2018. 3. 제30차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는 ‘상업등기’ 법제 개선의 건 이외에 “소규모기업이 당면하는 법적 문제점의 감축{Reducing the legal obstacles fac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¹³⁾도 있다. 이는 상업등기 개선과 유한책임조직 도입이라는 분과위원회의 두 방향을 포괄하는(overarching) 문서로서, 제1분과위원회가 왜 소규모기업 법제 개선에 나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을 해석하고 수용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글의 제3장에서는 주로 위 문서를 중심으로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4장은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각 지침안을 번역하고 이에 대한 주석의 주요한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입법지침안의 취지와 적용방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5장은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주요쟁점과 시사점이다. 위 입법지침안이 의도한 주요 변화 포인트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6장에서는 관련문제로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UNCITRAL 유한책임회사 입법 지침안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결론이다.

13) A/CN.9/WG.1/WP.110.

Ⅱ. 제1분과위원회 논의의 경과

1. 2015년 회의
2. 2016년 회의
3. 2017년 회의
4. 2018년 회의 - 상반기 회의

II

제1분과위원회 논의의 경과

1. 2015년 회의

가. 상반기 회의(2015. 4.)

이 회의에는 ① 단순화된 사업조직에 관한 모델법 초안을 담은 사무국 보고서(A/CN.9/WG.I/WP.89), ② 향후 분과위원회의 논의방향에 관한 제안을 담은 독일의 제안서(A/CN.9/WG.I/WP.90) 등이 새로이 제출되었다. 회의기간 중 전반부는 제23차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소규모기업 등록 및 설립의 일반 쟁점을 계속하고 검토하고, 후반부는 “단순화된 사업조직에 관한 모델법 초안”을 검토하였다. 주된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i) 온라인 내지 전자등록을 향후 문건에 명시하는 방안에 관하여,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국가인 경우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등록은 정보투명화 등에 큰 강점이 있고, 이를 각국에 강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ii) 소규모기업을 설립하는 구성원은 1인 및 다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최대인원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각국의 입법에 맡겨두기로 하였다. (iii) 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서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조직형성 서류(formation document)는 소규모기업의 중요사안을 담은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운영 서류(operating document)는 주로 회사의 경영 및 내부관계에 관한 서류로서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조문안과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iv) 출자 및 배당과 관련하여, 소규모기업의 출자형태는 다양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출자미이행 시 구

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다. 해당기준으로 이른바 insolvency test와 balance sheet test가 논의되었고, 부적절한 배당 시 그 수령자뿐 아니라 이러한 배당을 결정한 경영자에게까지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나. 하반기 회의(2015. 10.)

① 소규모기업이 당면하는 법적 문제점의 감축 (A/CN.9/WG.I/WP.92), ② 상업등기의 주요원칙(A/CN.9/WG.I/WP.93)과 그 부속서류들 (A/CN.9/WG.I/WP.93/Add.1 & A/CN.9/WG.I/WP.93/Add.1), ③ 프랑스 정부의 견해(A/CN.9/WG.I/WP.94) 등이 새로이 제출되었다. 특히 위 ②의 문건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작성한 사무국과의 사이에 문건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에 관한 간단한 Q&A를 거친 다음 거시적, 미시적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상업등기 규율시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 효율성(efficiency), 신뢰성(reliability) 및 투명성(transparency)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쟁점들은 아래의 순서로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a) 효율적 상업등기제도의 주요목적(para. 10), (b) 상업등기의 주된 기능(para. 11-13), (c) 상호(para. 15-16), (d) 사업진입(para. 17-19), (e) 상업등기기관 이외의 다른 공적기관에의 동시등록(para. 20), (f) 사업의 진행(para. 21), (g) 등록말소(para. 22), (h) 등록기관의 조직(para. 23-26), (i) 등록기관간의 국제 공조(para. 27-28), (j) 정보기술과 전자서비스 이용의 고려(para. 29-30), (k) 등록기관의 설립근거(para. 33), (l) 등록관의 지명 및 등록기관의 업무범위(para. 34-35), (m) 상업등기 서비스의 이용조건(para. 45-46), (n) 전자 등록신청과 서면 등록신청(para. 47-55).

2. 2016년 회의

가. 상반기 회의(2016. 4.)

이 회의에는 상업등기의 주요원칙에 관한 권고초안(Draft recommendations on key principles of business registration) 제1부(A/CN.9/WG.I/WP.96)와 제2부(A/CN.9/WG.I/WP.96/Add.1)가 새로

제출되었다. 실제 회의에서는 위 자료 이외에 사무국이 저번 회기에 제출하였던 단순화된 사업 조직에 관한 모델법 초안(Draft Model Law on a simplified business entity, A/CN.9/WG.I/WP.89), 소규모기업이 당연한 법적 장애 축소(Reducing the legal obstacles fac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N.9/WG.I/WP.92)도 함께 다루어졌다. 위 상업등기의 주요원칙에 관한 권고초안 제1부(A/CN.9/WG.I/WP.96)를 검토할 때에는, 앞서 2015년 하반기에 제출되었던 상업등기의 주요원칙 제1부(A/CN.9/WG.I/WP.93)와 제2부(A/CN.9/WG.I/WP.93/Add.1)를 함께 참조하였다.

분과위원회의 논의는 크게 세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향후 진행방향에 관한 논의로서, 작업 결과물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 다음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검토되었다. 결과물의 형태로 모델법보다는 입법지침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진행방향에 대하여는 단순화된 사업조직과 간이한 상업등기의 두 방면으로 하되, 하반기에는 일단 단순화된 사업조직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 단순화된 사업조직에 관한 모델법 초안(Draft Model Law on a simplified business entity, A/CN.9/WG.I/WP.89)이 검토되었다. 저번 회기에 마무리되지 못하였던 Chapter III, V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7조(지분, shares)와 관련하여, 지분, 지분권자(내지 구성원(member))를 주식(share), 주주(shareholder)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각국에서 지분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quota, part, interest 등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탄력적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제12조(출자목적물, consideration)와 관련하여 신용, 노무 등도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 가급적 출자목적물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업등기의 주요원칙에 관한 권고초안 제1부(A/CN.9/WG.I/WP.96)가 검토되었다. 기본적으로 저번 회기에 이루어졌던 상업등기의 주요원칙 제1부(A/CN.9/WG.I/WP.93)와 제2부(A/CN.9/WG.I/WP.93/Add.1)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권고안 중 “Regulation”, “law of the enacting State” 등 법령의 의미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었고, “single window” 내지는 “single interface”를 전제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 하반기 회의(2016. 10.)

이 회의에서는 주로 운시트랄 유한책임조직(UNCITRAL Limited Liability Organization. 이하 “UNLLO”)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A/CN.9/WG.I/WP.99와 A/CN.9/WG.I/WP.99/Add.1)을 검토하였다. 사무국이 미리 배포한 자료는 입법지침 권고안(Recommendation) 26개 조문과 각 조문에 대한 주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논의의 주된 대상은 아래와 같았다. (i) 제1장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권고안 제1조 내지 제6조): UNLLO의 개념과 활동범위, 법인격, 유한책임 등, (ii) 제2장 UNLLO의 설립(Formation of the UNLLO, 권고안 제7조 내지 제10조): UNLLO의 설립시기 및 설립시 제출할 자료 등, (iii) 제3장 UNLLO의 조직(Organization of the UNLLO, 권고안 제11조 내지 제13조): UNLLO의 의사결정 방식 및 대표기관, UNLLO 구성원(member)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법정되어 강제되는 사항(즉 강행규범으로 규정되는 조항)의 범위, (iv) 제4장 UNLLO의 경영자(Managers, 권고안 제14조 내지 제15조): UNLLO 경영자의 주의의무와 의사결정 방식, (v) 제5장 출연(Contribution, 권고안 제17조 내지 제18조): 출연의 강제성 여부와 출연의 평등성, (vi) 제6장 분배(Distributions, 권고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분배의 기준 및 평등성. 위법배당시의 환수, (vii) 제7장 권리이전(Transfer of Rights, 권고안 제22조): 구성원의 권리이전의 원칙적 허용과 제한가능성, (viii) 제8장 구조재편 또는 전환(Restructuring or Conversion, 권고안 제23조): 기존 UNLLO의 구조재편 및 전환의 방법, (ix) 제9장 해산 및 청산(Dissolution and Winding-up, 권고안 제24조): UNLLO가 해산되거나 청산되는 방식, (x) 제10장 구성원 탈퇴(Dissociation or Withdrawal, 제25조): UNLLO 구성원이 UNLLO로부터 탈퇴하는 방식, (xi) 제11장 기록보관, 검사 및 정보개시(Record-keeping, Inspection and Disclosure, 권고안 제26조): UNLLO에서 보관의 대상이 되는 기록의 범위와 각 구성원의 정보접근권 등.

3. 2017년 회의

가. 상반기 회의(2017. 4.)

이 회의는 전체 7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앞의 5일은 상업등기(business registry) 입법지침 초안(A/CN.9/WG.1/WP.101)을 검토하고, 나중의 이틀은 운시트랄 유한책임조직(UNLLO)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A/CN.9/WG.1/WP.99와 A/CN.9/WG.1/WP.99/Add.1)을 검토하였다. 주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상업등기 입법지침 초안이었다. 사무국이 준비한 초안은 전체 233문단(paragraph), 86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내용이었다. 여기 제시된 권고안(Recommendation) 56개를 포함하여 하나하나의 문단을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에 의하였다. 다만 각론을 상세히 검토한 다음 총론을 살펴보는 것이 낫다고 보아, 도입부분에 해당하는 24문단까지는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권고안 제9조 상업등기의 주요기능(Core Function of Business Registries)은 모든 논의를 마친 다음 전체를 복기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보아 이 회기에는 논의하지 않았다.

상업등기(business registration)의 범위 및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각국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¹⁴⁾ 원스톱 샵(One-stop shop)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개업초창기에 이루어지는 세무서, 사회보장기관에의 신고를 포함하여 넓게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작업에서 논하는 상업등기가 세법상, 사회보장법상 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등기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권고안에서는 잘못된 등기에 관한 등기기관의 손해배상 등도 규정하고 있었다(제42조). 이는 각국의 국가배상에 관한 것인바, 그 요건 등에 관하여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맡기자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다.

14) 노혁준, 주1, 6면

상업등기시 공증인 등 중개기관의 역할도 문제되었다. 일례로 권고안 제35조(전자적 접근)가 직접적인 전자 접근을 강조하면서 공증인 등 중개기관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유럽 국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반론으로서 중개기관의 언급은 중개기관 개재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귀결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직접적인 전자접근을 활성화 하되, 중개기관 활용은 각국의 선택에 맡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나. 하반기 회의(2017. 9.)

이 회의에서는 상업등기(business registry) 입법지침 초안(A/CN.9/WG.1/WP.106)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위 문건은 저번 회의에 제출된 초안(A/CN.9/WG.1/WP106)을 사무국이 수정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제출된 문서인 “소규모기업이 당면하는 법적 문제점의 감축(Reducing the legal obstacles fac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N.9/WG1/WP107)”에 관하여, 이는 실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배경 및 그 취지를 설명하는 ‘overarching introductory document’로서 가이드라인과 함께 향후 공식문건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권고안 제9조(상업등기제도의 주요기능)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현재 제9조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자는 점에는 공감하였다. 다만 현재 그 길이가 너무 길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폭 줄임으로서 이용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결국 권고안은 6개 내외의 중요한 기능들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주석으로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각 나라가 위 기능 뿐 아니라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기로 하였다.

권고안 제26조(등기신청의 거절)과 관련하여, 그 객관적 요건(objective requirement), 주관적 요건(subjective requirement)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형식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거절할 수 있도록 구분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큰 이견이 없었다. 논의 끝에 주관적 사유(substantive ground)에 기하여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표현을 다듬기로 하였다.

권고안 제43조(제재)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본문의 liability는 폭넓은 개념, 즉 형사, 민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각국도 이러한 접근을 수용하였다. 또한 제재와 책임에 대한 내용과 범위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효력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를 넓은 의미의 제재(sanction)의 한 형태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4. 2018년 회의 - 상반기 회의(2018. 3)

이 회의에서는 상업등기(business registry) 입법지침 초안(A/CN.9/WG.1/WP.109)의 최종 독회(final reading)가 있었다. 위 초안의 원형은 2017년 상반기 회의에 준비되었던 문건(A/CN.9/WG.1/WP101)이다. 이후 2017년 하반기 회의에 제출된 수정안(A/CN.9/WG.1/WP106)을 재수정한 것이 위 입법지침 초안이다.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미 위 두 번의 회의 시에 입법지침 대부분을 일독하면서 주요 사항을 검토한바 있으므로, 비교적 빠르게 독회가 진행되었다. 다만 기존 회의에서는 위 문건의 서문 및 정의조항은 다루지 않았는바, 이를 포함한 전체 문서가 검토되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소규모기업이 당면하는 법적 문제점의 감축(Reducing the legal obstacles fac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N.9/WG1/WP110) 문건도 개괄 문서로서 논의되었다. 이 문건 역시 위 입법지침 초안과 함께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단락별로 찬찬히 보면서 최종 독회를 진행하였다.

위 검토된 문건의 개별적인 내용(이른바 WP.109 및 WP.110) 및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조문별, 단락별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Ⅲ.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 WP110를 중심으로

1. UNCITRAL과 기업법제
2. 소규모기업의 의의
3. 제도권 외 경제(extralegal economy)
4. 제도권 경제 내 소규모기업 운영을 단순하고 바람직하게 함



III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 WP110¹⁵⁾를 중심으로

제1분과위원회의 소규모기업법제 개선작업의 기본방향은 이번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WP110 문서, 즉 “소규모기업이 당면하는 법적 문제점의 감축”에 담겨있다. 실제 회의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사항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위 문서의 제목을 “소규모기업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법적 환경의 도입(Adopting an enabling legal environment for the operation of MSMEs)”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 제목이 다분히 소극적, 부정적이므로 이를 좀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다만 그 밖의 수정사항은 대부분 기술적, 지엽적 부분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표현의 변경은 사무국에 맡겨진 경우도 많으므로, 이하에서는 WP110 문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WP110은 크게 세 개의 장, 52개 문단(paragraphs)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소규모기업의 의의를 다룬다. 여기에는 세계경제에서의 소규모기업의 중요성(A. The importance of MSMEs in the global economy), 소규모기업의 정의(B. Defining MSMEs), 소규모기업의 특성(C. The Nature of MSMEs), 모든 사업을 위한 좋은 사업환경 조성(D. Creating sound business environments for all businesses) 등 네 개의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¹⁶⁾ 제2장에서는 제도권 외 경제(the extralegal economy)를 다루고 있다. 상업등기, 유한책임조직의 개혁은 모두 정부가 관리가능한 이른바 제도권 영역으로 기업가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각국의 제도권 외 경제의 현황이 어떠한고, 제도권

15) A/CN.9/WG.1/WP.110. 이하 WP110이라고만 표시하기로 한다.

16) 제30차 회의에서는 섹션들의 순서에 관하여 먼저 소규모기업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설명한 다음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내로의 진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제도권 경제(legally regulated economy)를 어떻게 단순하고 바람직스럽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다시 제도권 경제 내 운영의 의미(A. Explaining the meaning of operating in the legally regulated economy), 소규모기업이 제도권 경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만들기(B. Making it desirable for MSMEs to operate in the legally regulated economy), 소규모기업이 제도권 경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쉽게 만들기(C. Making it easy for MSMEs to operate in the legally regulated economy)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위장별로 순차 검토하기에 앞서 UNCITRAL이 이러한 소규모기업 법제에 관심을 갖는 배경을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1. UNCITRAL과 기업법제

원래 UNCITRAL의 주된 관심분야는 국제상거래이다. 그럼에도 소규모법제 개선에 관심을 갖고 다루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적으로 빈곤탈출이 각 국제기구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을 법제적 측면에서 나누어 보면 크게 ① 기업법(business law) 개선, ② 재판에의 접근과 법치(access to justice and the rule of law), ③ 재산권(property right) 보장, ④ 노동권(labor right) 개선의 4가지 기둥(pillar)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⁷⁾ UNCITRAL의 제1분과위원회가 지금 진행하는 작업은 그 중 ① 기업법 개선인 것이다.

UNCITRAL은 ‘사업의 권리(business right)’는 개인과 그룹이 경제활동 및 시장거래를 할 수 있는 기존 권리의 합성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권리는 “그 규모를 불문하고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사업투자를 보호하면서, 임의적으로 강제되는 규제 또는 차별 없이 제도권 경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start a business in the legally regulated economy without facing arbitrarily enforced regulations or discrimination, removing unnecessary barriers that limit economic opportunities,

17) WP110, para.5.

and protecting business investments, regardless of their size”로 이해되고 있다.¹⁸⁾ 이러한 사업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UNCITRAL의 임무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사업의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바,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¹⁹⁾

- (a) 기본적인 사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즉 팔 권리, 작업장을 가질 권리, 필요한 인프라 및 서비스(전기, 물, 위생시설 등)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
- (b) 기업가들이 쉽고 부담 없이 사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시장에 접근하고 이를 종료할 수 있도록 경제 지배구조(economic governance)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 (c) 기업소유자가 사업자산과 개인자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한책임 조직 기타 다른 법적 형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 (d) 예금, 신용, 보험, 연금, 기타 위험관리수단을 제고하는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촉진하는 것
- (e) 기업가들로 하여금 모든 규모의 다른 사업들과의 연결점을 만들고 규제 및 요건을 준수하도록 도우면서, 새로운 시장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들의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렇게 볼 때, 최근 제1분과위원회의 작업 중 상업등기제도의 개선은 위 (b) 항목과, 유한책임조직의 도입은 위 (c) 항목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8) WP110, para.5.

19) WP110, para.5.

2. 소규모기업의 의의

가. 세계경제에서 소규모기업의 중요성

전세계적으로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의 숫자는 5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²⁰⁾ 신흥시장의 경우 전체 기업 수의 8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²¹⁾ 한편 중소기업(SME)으로 한정할 때에도, 선진국에서 고용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4%를 각기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국의 경우에도 고용의 45%, 국내총생산의 63%를 차지한다.²²⁾

구체적인 경제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소규모기업의 중요성은 여실하다.²³⁾ EU의 경우 기업들 중 95%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들이 민간영역 고용의 2/3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⁴⁾ 나아가 중소기업 10개 중 9개가 영세기업²⁵⁾임을 감안한다면 영세기업은 EU의 주류경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기업들 중 90% 이상이 영세기업²⁷⁾이다. 영세기업에 관련된 일자리는 40만개로 추산되고 있다.²⁸⁾ 즉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25만 개이지만, 간접적(영세기업에 의한 구매)인 효과는 2만개, 이른바 유발수요(영세기업 종사자에 의한 구매)에 따른 효과는 13만개로 분석되고 있다.²⁹⁾

20) WP110, para.8.

21) World Bank Group Study, <http://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sector/brief/smes-finance>.

22) IFC, Jobs Study: Assessing Private Sector Contributions to Job Creation and Poverty Reduction (2013), pp.10-11. https://www.ifc.org/wps/wcm/connect/0fe6e2804e2c0a8f8d3bad7a9dd66321/IFC_FULL+JOB+STUDY+REPORT_JAN2013_FINAL.pdf?MOD=AJPERES

23) WP110, para.9.

24) WP.110, para 9.

25) EU의 영세기업 판단은 1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른다. WP110, para.9.

26) European Commission's Annual report on European SMEs 2015/16: SME recovery continues (https://ec.europa.eu/jrc/sites/jrcsh/files/annual_report_-_eu_smes_2015-16.pdf).

27) 미국에서의 영세기업 판단은 소유주 포함 5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 WP110, para.10.

28) WP.110, para 10.

29) Association of Enterprise Opportunity (AEO), Bigger than you think: The Economic Impact of Micro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2014)

(<http://microenterprisealabama.org/wp-content/uploads/2014/09/Bigger-Than-You-Think-The-Economic-Impact-of-Microbusiness-in-the-United-States-copy.pdf>).

그밖에 (i) 카리브해 국가 공동시장(CARICOM: the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의 경우 소규모기업은 국내총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일자리의 70%를 맡고 있으며,³⁰⁾ (ii)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소규모기업은 국내총생산의 50%를 기여하고 지역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고,³¹⁾ (iii) 아세안국가의 경우(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중소기업이 모든 기업들 숫자의 95%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 50% 기여하고 있으며,³²⁾ (iv)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중소기업의 숫자가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절반 이상의 고용이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³³⁾ (v) 아프리카에서도 중소기업이 고용의 45% 이상을 담당하고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³⁴⁾

나. 소규모기업의 정의

어느 범위까지를 소규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1분과위원회도 후술하듯 소규모기업의 특성만을 본건 작업에 표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각국에 맡기기로 하였다.³⁵⁾

다만 WP110은 각주 16에서 각국 입법시에 판단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입법례들은 살펴보면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을 정의함에 있어서 각국이 활용하는 주요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연도 또는 역력상 연도 말 등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30) www.oas.org/en/media_center/press_release.asp?sCodigo=E-061/12.

31) www.informeavina2008.org/english/develop_case2_SP.shtml.

32) P. Manawanitkul, Enabling Environment for Microbusiness – ASEAN Experience, Presentation delivered at th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Enabling Environment for Microbusiness and Creative Economy”, organized by UNCITRAL,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Oct. 14 - 15, 2013)

33) www.apec.org/Groups/SOM-Steering-Committee-on-Economic-and-Technical-Cooperation/Working-Groups/Small-and-Medium-Enterprises.aspx

34) African Development Group News and Events page, The AfDB SME Program Approval: Boosting Inclusive Growth in Africa (2013) www.afdb.org/en/news-and-events/article/the-afdb-sme-program-approval-boosting-inclusive-growth-in-africa-12135.

35) WP110, para.12.

근로자 숫자, ② 해당 기업이 생산한 연간 총수입 또는 총매출액, ③ 대차대조표상 자산, ④ 기업이 지급하는 월급여 총계, ⑤ 자본총계가 그 예이다.

다. 소규모기업의 특성

소규모기업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매우 다변적이어서 그 공유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³⁶⁾ 기업 형태적으로도 1인 기업 또는 가족기업일 수도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업영역도 서비스 산업, 농업, 공예 등 모든 영리영역에 걸쳐 있다. WP.110은 대략 11개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³⁷⁾

- (a) 소규모성
- (b) 부담스러운 규제 장벽에 의한 더 큰 충격
- (c) 대출 또는 위험공유에 관한 가족 및 친구에의 의존성
- (d) 자본 또는 은행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
- (e) 고용플의 한정
- (f) 판로의 한정
- (g) 남용적 행위 또는 부패한 행위에 대한 취약성
- (h)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대한 제한적 접근
- (i) 개인자산과 사업자산의 구분 능력 부족
- (j)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취약성

36) WP110, para.13.

37) WP110, para.16.

(k) 사업을 이전 또는 매각할 때의 어려움과 유무형자산(고객명단, 고객관계 등)을 활용한 이익창출의 어려움

라. 모든 사업을 위한 좋은 사업환경 조성

제1분과위원회는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의 개념에 관하여, 사업활동을 규율하는 정책적, 법적, 제도적 및 규제적(policy, legal,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본다.³⁸⁾ 여기에는 관리, 강제집행 메카니즘과 주요 관련기관의 운영제도도 포함된다. 이 때 주요기관에는 정부기관, 규제당국, 사업조직, 거래조합 및 시민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환경은 국가에 따라 다르고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업환경으로서, 부담스러운 규제, 높은 경제적 불평등, 제도의 열악, 낮은 공공인프라 수준, 자금 등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³⁹⁾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1분과위원회가 추진하는 상업등기 제도의 개선과 유연한 회사법제 도입은 사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⁴⁰⁾

3. 제도권 외 경제(extralegal economy)

제도권 외 경제는 종종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라고 불리기도 한다.⁴¹⁾ 제도권 외에 존재하므로 그 크기나 형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소규모기업 중 대략 77%가 제도권 외 경제로 추산되고 있다.⁴²⁾ 또한 일자리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우 45%, 선진국의 경우 25%가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다는 분석이 있고, 나아가 국내총

38) WP110, para.17.

39) K. Kushnir, M. L. Mirmulstein and R. Ramalho,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ound the world: How many are there, and what affects their count?, World Bank/IFC (2010).

40) WP110, para.20.

41) WP110, para.21.

42) WP110, para.21.

생산과 관련하여 각기 35%(개발도상국), 15%(선진국)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⁴³⁾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제도권 외 경제의 비중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38%,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의 경우 18%,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경우 36%, OECD 국가들의 경우에 13%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약 17%의 비중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⁴⁾ 향후 전망으로서 2020년까지 노동인구 중 2/3가 이러한 제도권 외 경제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⁴⁵⁾

비공식 또는 제도권 외의 의미 내지 범주는 각국에서 다양하게 규정된다. 예컨대 당국이 해당 사업을 인식하면서 지방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식 등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공식 경제로 분류되기도 한다.⁴⁶⁾ 제1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일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도권 경제(legally regulated economy)란 공식적인 규제 및 구조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within the ambit of formal regulation and structure)을 뜻하는 반면 제도권 외 경제(extralegal economy)란 그 영역 외부에 위치하는 것(fall outside of this scope)이다. 예컨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면 제도권 외 경제인바, 만약 법령상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등록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미등록 기업도 제도권 경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⁴⁷⁾ 또한 제도권 외 경제라고 하여 곧 불법적, 범죄적 활동(illegal or criminal activity)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법활동은 아예 제1분과위원회의 논의 대상, 즉 제도권 외 경제를 제도권 경제로 유도하고자 하는 회의 취지에서도 배제되어 있다.⁴⁸⁾ 마찬가지로 특히 선진국 기업들의 경우 이미 제도권 경제 내에 존재하면서 소득을 줄여 신고한다든지 불법적으로 고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제1분과위원회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⁴⁹⁾

43) WP110, para.21.

44) WP110, para.27.

45) WP110, para.27.

46) WP110, para.22.

47) WP110, para.23.

48) WP110, para.24.

49) WP110, para.25.

분과위원회가 제도권 외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순기능 때문이다.⁵⁰⁾ 그 활용에 따라서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다양한 재능이 여기에서 발현될 수 있고 기업 및 나라경제 활동의 기저(base)가 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주변부(marginal or peripheral sector)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구성요소(building block)로 다루어야만 한다. 이렇듯 순기능을 갖는 제도권 외 경제가 제도권 경제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진입장벽 및 비용이 진입에 따른 이익을 넘어서고, 진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제도권 경제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⁵¹⁾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제도권 진입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한바 제1분과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수단은 다음 네 가지이다.⁵²⁾

- (a) 진입 비용, 세금, 수수료, 사회적 출연, 준수비용 등 제도권 경제로 진입,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축소,
- (b) 고정사업장 취득에 관한 관료주의 및 비용을 축소시키고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및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될 이익을 높임,
- (c) 제도권 경제에 진입하는 이익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이미 제도권 경제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들도 도울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환경을 개선함,
- (d)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 장치를 강화함.

50) WP110, para.26.

51) WP110, para.28.

52) WP110, para.30.

4. 제도권 경제 내 소규모기업 운영을 단순하고 바람직하게 함

가. 제도권 경제 내 운영의 의미

(1) 제도권 경제의 장점

(가) 국가 입장에서의 장점⁵³⁾

제도권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가는 세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와 제도권 외에서 아무런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제도권 경제 활성화는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내 사업 및 상업활동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⁵⁴⁾

간접적인 장점으로서, 제도권 경제의 확장은 소규모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하고 국가의 빈곤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제도권 경제 내 기업은 양질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관계를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더 정확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정책을 수립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⁵⁵⁾

(나) 기업가 입장에서의 장점⁵⁶⁾

a. 대중 및 시장에서의 노출(Visibility to the public and to markets)

제도권 경제에 진입하는 경우 잠재적인 고객군이나 영업계약, 사업기회 확장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하여 좀 더 호의적 조건으로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수익성도 증진된다. 친지, 친구, 지역사회와의 거래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업가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53) WP110, para.34-35.

54) WP110, para.34.

55) WP110, para.35.

56) WP110, para.36.

b. 은행 시스템과 금융기관에의 노출(Visibility to the banking system and financial institutions)

친지, 친구 이외에 다양한 재원으로부터의 금융조달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c. 공적 조달(Public procurement)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 조달계약은 제도권 내의 기업들에게만 참여가 허용된다. 특히 공적 조달계약인 경우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년 기업가들에게 일정 부분의 쿼터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바, 소규모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먼저 제도권 경제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d. 법적 유효성(Legal validation)

제도권 경제 진입을 통해 기업의 법적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효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이용하기 용이해지고, 계약의 강제집행 등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구조조정 및 청산 등을 통해 쉽게 이를 탈출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일부 국가에서는 등기된 사업조직에 관하여 상사법원, 기업 조직에 관한 조항의 탄력적 적용 등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e. 법준수(Legal compliance)

제도권 경제 내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기업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즉 제도권 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따른 벌금 등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나아가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공권력 등과의 관계에서 뇌물, 부패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측면도 있다.

f. 탄력적인 기업조직 및 자산분리제도에의 접근(Access to flexible business forms and asset partitioning)

기업가는 최초의 상업등기절차를 통하여 자신에 가장 적절한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자산분리(asset partitioning)를 통해 개인자산을 사업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이렇듯 사업자산으로 분리된 기업인 경우 향후 이를 따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개인자산으로부터의 위험 분리로 인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g. 고유상호와 무형자산(UUnique name and intangible assets)

기업가는 최초의 설립등기시에 독립적인 상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 및 사업은 이후 기업가 개인과 구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고객명단, 상업적 관계 등 무형의 자산도 사업과 함께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경제 진입은 기업가에 유리한 점이 있다.

h. 성장기회(Opportunities for growth)

적법한 설립절차가 종료된 이후 해당 기업 및 기업가는 국가의 더 큰 연합조직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기회를 넓힐 수 있다. 예컨대 많은 나라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대하여만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i. 근로전문화의 기회(Opportunities for specialization of labor)

정식으로 설립등기된 사업인 경우 기업가는 가족, 친구들을 넘어 고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 결과 더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하고, 근로자들 사이에도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j.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의 접근(Access to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국가에서는 기업가들 중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권 경제에 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지원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k. 권한부여 및 해방효과(Empowerment and emancipation effects)

특히 기업가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년 기타 사회적 약자들인 경우 이른바 해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여성기업가들인 경우 종종 부패와 관계당국자들의 남용적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 장기적 유익(Longer term gains)

제도권 경제 하에서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까지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소규모기업의 확장성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것이다.

(2) 의사연락과 교육(communication and education)의 필요성

위 제도권 경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진입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내용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영자인 경우 매스미디어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⁵⁷⁾ 아프리카의 콩고 등의 경우 문맹인 기업가들을 배려하여 노래,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⁵⁸⁾

의사연락과 교육 관점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⁹⁾

57) WP110, para.37.

58) WP110, para.38.

59) WP110, para.39.

- ① 기업가의 사업장소에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교육 및 의사연락 및 모바일 등록 및 지원 카운트 제공
- ② 프로그램 홍보를 돕기 위해 거래단체 또는 비공식적인 근로자 단체를 활용
- ③ 포스터, 옥외게시판 뿐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매체 등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매스미디어 이용
- ④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한 전반적 공지(특히 모바일 결제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효과적임)
- ⑤ 의사연락 및 교육이 해당 지역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 ⑥ 소셜미디어의 활용: 기술적 장애가 있는 국가에서는 이용이 제한적이지만, 소셜미디어는 특히 젊은 기업가 및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정보전파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⑦ 성별로 특화된 거래 과정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된 과정을 개발
- ⑧ 해당 맥락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식의 활용⁶⁰⁾

나. 소규모기업이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만들기

소규모기업을 제도권 경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경제진입의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⁶¹⁾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내용 및 구조는 각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World Bank Group, UNCTAD, UNIDO, the Asian Development Bank or OHADA 등).⁶²⁾ 구체적으로 각국에서 도입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60) WP110, para.39 각주 41은 이러한 교육방식의 한 예로서 ‘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61) WP110, para.40.

62) WP110, para.41.

63) WP110, para.42.

- ① 사업 등기절차의 단순화
- ② 사업 등기절차에 대한 지원
- ③ 무료(또는 엽가의) 등기
- ④ 등기된 지위 및 사업조직 형태를 나타내는 공적인 증명서의 수령
- ⑤ 은행서비스에의 체계적 접근과 그 지원
- ⑥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관해 더 용이한 신용부여
- ⑦ 회계교육 및 서비스, 소규모기업에 적합한 단순한 회계규칙
- ⑧ 사업계획 준비 지원
- ⑨ 교육(재고관리 및 재무 포함)
- ⑩ 교육비용에 관한 세금 또는 기타 특례
- ⑪ 조정 기타 다른 분쟁해결수단을 통한 잠재적 행정적 남용행위로부터의 보호
- ⑫ 과세중재서비스 및 단순화된 세금양식 등 단순하고 형평에 맞는 과세
- ⑬ 사업상담서비스
- ⑭ 새로운 사업이 관련법 전체를 준수하기까지 일정기간 유예기간 부여
- ⑮ 영세기업 및 소기업이 관련 공적기관에 최초 등록한 후 잠정적인 세금면제 기간 적용
- ⑯ 소규모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총액 보상 또는 정부보조금 및 프로그램
- ⑰ 사업연합체의 구성원자격 무료 부여 등을 통한 네트워킹 기회 및 사업경험에의 접근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 및 사업홍보

- ⑱ 영세기업, 소기업 또는 사회적 취약층이 소유하는 기업이 계약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특정한 공적 조달프로그램
- ⑲ 저가의 기술인프라
- ⑳ 건강보험 취득에의 접근 및 지원
- ㉑ 소규모기업들이 경험 및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기업가들에 의한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다. 소규모기업이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는 것을 쉽게 만들기

소규모기업의 경영자가 제도권 경제 진입에 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더라도 전환에 따르는 각종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실제 진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두 분야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단순하고 간결한 사업 등기절차(Simplified and streamlined registration for business)이다. 다만 이러한 등기절차 합리화는 비단 소규모기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규모기업을 위한 탄력적이고 단순한 기업형태(Flexible and simplified business forms for MSMEs)이다. 어떠한 사업에서는 개인기업으로도 그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 국가는 이러한 개인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도 있다.⁶⁵⁾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 자산분리(asset partitioning)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자산분리는 유한책임사업주체(limited liability business entity)를 정의하는 특성(defining features)이라고 할 수 있다.⁶⁶⁾ 다만 자산분리의 혜택은 완전한 유한책임이 아니고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법적 구조에 대하여도 적용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예컨대 (i) 개인상인이 사업자산(professional asset)과 개인자산(personal asset)을 구분하여

64) WP110, para.44.

65) WP110, para.47.

66) WP110, para.49.

사업채권자들이 사업용 재산에만 집행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⁶⁷⁾ 또다른 예로서, (ii) 별도의 펀드를 가족적 목적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든 다음(회사가 이러한 별도의 펀드 설정하는 것도 가능),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위 펀드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⁶⁸⁾ 이 때에 이러한 펀드의 존재가 등기를 통해 공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기존 채권자의 설립이익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⁶⁹⁾ 마지막으로 (iii) 법인격, 유한책임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자산분리를 하는 것으로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계약(business network contract)이라는 형태도 있다.⁷⁰⁾ 이 방식은 개인사업자, 회사 등 복수의 기업군이 활용 가능하다. 위 네트워크 계약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종의 조인트 벤처를 결성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위 네트워크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고(문서에 의한 체결, 벤처의 목적, 지속기간, 참여자의 권리, 의무의 기술 등) 등기되어야 하며,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펀드(capital fund)가 설정되어야 한다. 위 자산분리의 이념에 따라, 이 펀드는 네트워크의 활동범위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이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67) WP110, para.50.

68) WP110, para.51.

69) 한편 이러한 펀드 유형의 변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을 수익자로 하여 특정 목적에 쓰도록 펀드설정자 스스로 선언(declaration)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펀드가 독자성을 부여받으려면 공적 문서(public deed)에 의해 설정되고 또한 그 내용이 등기되어야 할 것이다. WP110, para.51.

70) WP110, para.52.

IV.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내용: WP109를 중심으로

1. 논의의 방향
2. 용어의 정의
3. 제1장 상업등기청의 목적(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y)
4. 제2장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y)
5. 제3장 상업등기청의 운용(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y)
6. 제4장 사업의 등기(Registration of Business)
7. 제5장 등기 이후의 절차(Post Registration)
8. 제6장 접근성 및 정보 공유
(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
9. 제7장 수수료(Fee)
10. 제8장 책임 및 제재(Liability and Sanction)
11. 제9장 등기폐쇄(Deregistration)
12. 제10장 기록보존(Preservation of Records)

IV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내용: WP109를 중심으로

1. 논의의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제1분과위원회의 논의는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조문안 및 주석을 담고 있는 WP109⁷¹⁾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3월 마지막 독회에서 입법지침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수정이 있었으나 대부분 기술상, 표현상의 문제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변경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표현 및 조정을 사무국에 맡겨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WP109 원문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 2018년 3월 독회의 주요 변경사항을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입법지침안 중 ‘business registration’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입법지침안은 회사설립시에 각종 공적기관들에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절차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인바, 다만 위 ‘business registration’이 과세관청,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등록과는 구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⁷²⁾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주요 등기, 등록으로는 상업등기(회사기업인 경우 설립등기 포함), 세무서예의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건보, 연금, 고용, 산재) 가입 등이 있다. 이 중 과세관청,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등록을 배제하면 남는 것은 상업등기이다. 물론 ‘business registration’을 단어 그대로 사업등록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 중 가장 그 취지에 부합하는 용어

71) A/CN.9/WG.1/WP.109(이하 WP109으로 표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초안은 2016. 4. 제26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다(A/CN.9/WG.1/WP.96 및 A/CN.9/WG.1/WP.96/Add.1). 위 초안은 이후 A/CN.9/WG.1/WP.101, A/CN.9/WG.1/WP.106을 거치면서 순차로 수정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72) 예컨대 WP109, para.16 중 상업등기청 또는 상업등기 시스템에 대한 정의조항 참조.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business registration’을 ‘상업등기’로 번역하고자 한다. 한편 입법지침안에는 ‘business registry’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바, 지침안 자체에서 이 용어의 사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어떤 경우에는 등기부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⁷³⁾ 다른 곳에서는 등기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관⁷⁴⁾ 또는 그 시스템⁷⁵⁾을 지칭하기도 한다. 위 ‘business registry’ 용어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사용할지의 작업은 사무국에 맡겨진 상태이다. 일단 이 글에서는 ‘business registry’를 일용 상업등기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서 ‘상업등기청’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WP의 초반부⁷⁶⁾는 도입부(introduction)로서 입법지침안의 연혁, 취지 등이 나타나 있다. 이는 일반론으로서 앞서의 WP110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도입부 중 para.16은 입법지침안상 용어의 정의조항이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용어정의에 관한 위 문단을 살펴본 다음 입법지침의 구체적 조문안 및 주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WP109 para.16은 입법지침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21개의 용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간 회계보고서(Annual accounts): 사업연도 말에 작성되는 사업활동에 관한 재무정보
- 지점(Branch): 사업이 설립된 곳 또는 그밖의 국내외의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entity⁷⁷⁾)

73) 예컨대 정의조항 중 ‘등기된 사업(registered business)’에 관한 표현 참조.

74) 예컨대 제16조의 ‘business registry’는 다른 세무기관 등에 대응되는 하나의 authority로서 규정되어 있다.

75) 예컨대 정의조항은 ‘business registry’를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풀이하고 있다.

76) WP109, para.1-28.

77)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entity’라는 용어가 법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적절한 단어를 추가검토하기로 하였다.

- 상호(Business name): 해당 사업을 대표하여 등기된 명칭⁷⁸⁾
- 상업등기청 또는 상업등기 시스템(Business registry or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령하고, 저장하고 대중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의 시스템. 이는 세무등록, 사회보장등록 등 다른 공적기관에 사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과 구별된다.
- 등기폐쇄(Deregistration): 사업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음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
-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데이터 메시지 내에 또는 이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자형태의 데이터. 이는 데이터 메시지에 관해 서명자를 식별하고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⁷⁹⁾
-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 있는(Good quality and reliable): 상업등기 시스템과 여기에 등기된 정보는 등기 정보가 가능한 한 최신이고 정확하게(current and accurate) 유지 되고, 시스템이 그 운영과 안정성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 있다’는 것이 그 정보가 등기, 등기관, 등기된 사업 또는 제3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기술(ICT): 정보와 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상품(Information products): 이용신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전자적 또는 종이 형태로) 상업등기청에 의해 처리되거나 공개되는 정보
-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 정보상품을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상업등기청에 의해 설정된 시스템

78)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등기된’ 것 뿐 아니라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것도 상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미등기상호를 포함하도록 정의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79)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2001), article 2 참조.

- 법(Law): 해당 국가의 적용가능한 법으로서, (입법 또는 행정규칙,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을 불문하고) 상업등기청을 창설하기 위해 도입된 특정한 규정들과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업등기청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포괄적인 국내법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 제도권 경제(Legally regulated economy): 국가가 규율하는 법적, 규제적 체제 내에서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 위 영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영리활동(이는 종종 제도권외 경제라고 불린다)이나 상품, 용역에 관한 불법적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규모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상업등기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 원스톱 샵(One-stop shop): 사업이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등록(최소한 세무등록, 사회보장등록 뿐 아니라 상업등기 포함)에 관해 복수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 사무실, 전자적 플랫폼의 단일 인터페이스 또는 조직. 원스톱 샵은 등록이 필요한 모든 공적 기관들 사이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관들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신청양식 및 결제방식 이용 뿐 아니라 이러한 공적기관들 사이의 사업에 관한 정보의 동시공유⁸⁰⁾를 허용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Periodic returns): 매년 또는 달리 정한 기간마다 작성되는 사업의 구성, 활동 및 재무정보를 담은 문건. 등기된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이를 담당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보호정보(Protected data):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

80)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동시공유(simultaneous sharing)” 표현에 관하여, 공유의 방식은 각국이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를 삭제하고 단순히 공유(sharing)로 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등기된 사업(Registered business):** 등기신청에 따라 공적으로 상업등기청에 등기된 사업
- **등기된 정보(Registered information):** 등기청에 제출된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정보와 대중에 공개될 정보⁸¹⁾를 포함한다.
- **등기신청인(Registrant):** 등기청에 기재된 신청양식과 추가적인 문서를 제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등기관(Registrar):** 등기청의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
- **고유 등기번호(Unique identifier):** 한번만 사업에 배정되고 국가의 공적기관에 의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숫자에 의한 또는 글자와 숫자가 결합된) 일련의 기호(characters)

3. 제1장 상업등기청의 목적(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y):

(1) 제1조 상업등기청의 목적

제1조 상업등기청의 목적

법은 사업에 필요할 수 있고 상업등기, 세무등록, 사회보장 그밖의 공적등록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모든 등록시스템의 일부로서 제도권 경제(legally regulated economy)내 사업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업등기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초안의 주석에 따르면 상업등기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다.⁸²⁾ 또한 제1조는 공적 등기, 등록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명시함으로써 후술하는 윈스톱 샵의 개념을 담고 있다.

81)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대중에 공개될 정보(information that will be made public)” 표현에 관하여, 실제로는 공개될 정보와 공개된 정보 모두를 지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82) WP109, para.29.

(2) 상업등기청의 목표

제2조 상업등기청의 목표

법은 상업등기청이 다음 목표를 위해 설립됨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주체성(identity) 부여; 그리고
- (b) 등록된 사업에 관한 정보의 수령, 저장 및 대중의 접근허용

세계적으로 볼 때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는 기업조직은 대체로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⁸³⁾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조직인 경우에도 그가 원하면 규모, 형태를 불문하고 상업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지침안의 입장이다⁸⁴⁾.

(3) 제3조 모든 사업에 등기를 허용하는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구조

제3조 모든 사업에 등기를 허용하는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구조

법은

- (a) 상업등기청을 규율하는 단순한 규칙체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예외 또는 재량의 부여를 지양하여야 하고,
- (b)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상업등기를 하는 소규모기업이 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절차만을 밟도록 하여야 한다.

(a)항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재량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예컨대 오류의 자체수정 등은 불필요한 재량의 부여라고 하기 어렵고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⁸⁵⁾ (b)항과 관련하여 등기정보를 업데이트할 의무는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변경 신고

83) WP109, para.31.

84) WP109, para.32.

85) 제27조 (c) 참조.

기간을 늘리는 것, 동일정보를 반복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 일정한 경우에 소규모 기업의 등기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⁸⁶⁾

(4) 제4조 상업등기 시스템의 주요 특성

제4조 상업등기 시스템의 주요 특성.

법은 상업등기 시스템이 다음의 주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규정해야 한다.

- (a) 등기는 일반이 접근가능하고, 단순하며, 사용자 편의적(user-friendly)이고 시간 및 비용 효율적(time- and cost- efficient)이다
- (b) 등기방식은 소규모기업의 수요에 부합한다.
- (c) 일반에 이용가능한 등기사업정보는 쉽게 검색가능(searchable and retrievable)하다; 그리고
- (d) 등기시스템과 등기된 정보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있으며(good quality and reliable), 주기적 업데이트 및 시스템 확인을 통해 유지된다.

어떠한 형태의 등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등기된 정보가 좋은 품질을 가지며 현상을 반영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것(high quality, current and reliable)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⁸⁷⁾ (d)항은 등기된 정보 뿐 아니라 등기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등기시스템의 신뢰성이란, 등기시스템이 업무수행 및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여기에 등기된 정보가 가능한 한 현상을 반영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는 것을 뜻한다.⁸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는 각국에 맡겨져 있다.⁸⁹⁾ 예컨대 등기된 정보에 일종의 구속력(legally binding)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신청자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을 부여할 것인지는 각국의 선택사항이다. 어느 경우이든 후술하듯이 등기된 정보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는 등기관 관련 법제가 명시하여야 한다.⁹⁰⁾

86) WP109, para.36.

87) WP109, para.39.

88) WP109, para.38.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refers to a system that may be considered positively in terms of performance and security and in which registered information is kept as current and accurate as possible”)

89) WP109, para.38.

90) WP109, para.38.

주석에서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있는’ 등기시스템의 창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업 아이덴티티(identity)의 무단도용을 방지하는 것이다.⁹¹⁾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용, 패스워드 이용, 전자서명 기타 전자적 인증수단 활용이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유지되는 방식과 업데이트 주기에 관한 부분이다.⁹²⁾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정보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등기부 자체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상업등기청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등기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상업등기청이 그 내용을 해당 기업에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 상업등기청에 제출된 정보를 임의 변형시킬 등기관을 재량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⁹³⁾

4. 제2장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y)

(1) 제5조 권한 있는 등기관

제5조 권한 있는 등기관

법은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상업등기청은 국가 또는 국가에 의해 지정된 기관(authority⁹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 (b) 국가는 상업등기청에 관한 권한(competence)을 계속 갖는다.

(b)항은 어떠한 경우이든 국가가 상업등기청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짐을 명시한다. 이는 등기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등기제도의 과도한 상업적 활용 또는 사기적 활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등기제도가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91) WP109, para.40.

92) WP109, para.41.

93) WP109, para.42.

94)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표현상 ‘authority’를 ‘entity’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것에 대한 책임(liability)를 부담하고 있다.⁹⁵⁾ 또한 등기부 상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할 최종적 권한도 국가에 있다.⁹⁶⁾

어떠한 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업무를 주관하도록 할 것인지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 즉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법기관이 이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다.⁹⁷⁾ 또한 구체적 업무를 외부에 위임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일 수도 있고 순수 민간영역일 수도 있다.⁹⁸⁾ 어느 경우나 등기소의 일상적인 운영(day-to-day operation)은 수임자에게 이관된다. 한편 등기업무 주관기관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경우⁹⁹⁾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독립성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자율성에 제약을 받는 경우(quasi autonomous)가 있을 수 있다.

(2) 제6조 등기관의 지정 및 책임성

제6조 등기관의 지정 및 책임성

법은,

- (a) [국가 또는 관련법이 권한을 부여한 자]에게 등기관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 등기관의 업무수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 (b) 등기관의 권한 및 의무와 이러한 권한 및 의무가 위임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registrar)의 선임방식은 다양하고, 일부 국가에서 실행하듯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도 허용된다.¹⁰⁰⁾ 등기관은 관련법이 규정하는 범위

95) WP109, para.46.

96) WP109, para.46.

97) WP109, para.44.

98) 다만 순수 민간에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WP109, para.45.

99) WP109, para.45는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를 그 예로 들고 있다.

100) WP109, para.48.

내에서 담당업무 중 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¹⁾ 국가는 등기관 및 관련 직원들의 책임요건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¹⁰²⁾

(3) 제7조 상업등기 운영의 투명성

제7조 상업등기 운영의 투명성

법은 등기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업등기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칙, 절차, 서비스 기준(service standard)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말하는 서비스 기준이란 이용자가 받을 권한이 있는 등기서비스를 정의하는 한편 등기청이 추구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오류수정에 관한 조항, 정비점검 등을 이유로 한 서비스 제한기간의 최대치 및 관련 사전공지를 규율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 기준은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등기청이 제공하는 등기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¹⁰³⁾

(4) 제8조 표준 등기양식 이용

제8조 표준 등기양식 이용

법은 상업등기를 위해 도입된 간단한 표준양식을 규정해야 하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자에게 위 양식의 기재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 시 단순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등기신청자 입장에서 별도의 중개기관 도움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비용절약의 장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표준양식 활용에는 공적기관들간 정보공유가 용이해진다는 장점도 있다.¹⁰⁴⁾

101) WP109, para.48.

102) WP109, para.49. 이는 후술하는 제46조와도 연결된다.

103) WP109, para.51.

104) WP109, para.52.

다만 이러한 표준양식 이용이 각 공적기관 특유의 목적에 따른 추가정보 요청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등기신청자 스스로가 표준양식 이외에 내부운영에 관한 합의서, 재무상태에 관한 추가정보 등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¹⁰⁵⁾

(5) 제9조 상업등기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제9조 상업등기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법은 상업등기 담당자들의 요청받은 서비스 수행능력 뿐 아니라 상업등기절차, 서비스 기준 및 전자등기부의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발전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한다.

상업등기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수단에는 전통적인 강의형태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일례로 팀구축 활동(team building activities), 롤플레잉(role-playing)을 활용하기도 하고, 연간 목표치를 제시하여 이에 따라 승진, 성과급을 부여할 수도 있다.¹⁰⁶⁾ 또한 담당자들 상호간의 학습(peer-to-peer learning), 국내외적 교육네트워크 수립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⁷⁾ 나아가 공증인 등 중개기관의 역할이 큰 나라에서는 이러한 중개기관의 역량강화도 현안이 될 수 있다.¹⁰⁸⁾

(6) 제10조 상업등기청의 주요 기능

제10조 상업등기청의 주요 기능

법은 다음을 포함하여 상업등기청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등기
- (b) 상업등기청이 수집한 관련정보에 대해 대중의 접근 부여

105) WP109, para.52.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106) WP109, para.53.

107) WP109, para.55.

108) WP109, para.56.

- (c) 등록된 사업에 고유 등기번호 배정
- (d) 필요한 공적기관 사이에서의 정보 공유
- (e) 상업등기청이 보유하는 정보를 가능한 한 최신으로 유지
- (f) 등기부상 정보의 완결성(integrity)을 보호
- (g) 사업의 의무와 책임, 상업등기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정보의 법적 효력을 포함하여 사업 설립에 관한 정보의 공지; 그리고
- (h)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사업자가 상호를 탐색하고 예약(reserve)하도록 조력

입법지침의 앞부분인 제10조에서 등기청의 주요 기능에 관하여 미리 규정하는 이유는 등기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함이다. 다만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 그 기능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성은 있다.¹⁰⁹⁾

구체적으로, (g)항은 널리 등기청이 갖고 있는 정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상업등기청의 기능을 뜻한다.¹¹⁰⁾ (h)항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상업등기 시 처음 직면하는 문제는 어떻게 상호를 선정할 것인지 이므로 이에 상업등기청이 조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존 상호 등과 어느 정도로 충분히 구분되어야 하는지(sufficiently distinguishable)는 각국이 정할 사항이고 각국은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해 등기신청자의 상호 선정을 도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약시스템(name reservation service)을 통해 등기신청인이 고려하고 있는 상호가 일정기간 보전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¹¹⁾ 위 (d)항은 윈스톱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후에 상술한다. 이러한 윈스톱에서는 필요한 인허가 자체를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이에 관한 정보제공 및 담당기관 안내에 그칠 수도 있다.¹¹²⁾

그밖에 상업등기청은 등기 실행을 통해 등기신청자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¹¹³⁾

109) WP109, para.65.

110) 조문안 자체는 일반 공개된 것으로 한정하나, 이에 관한 주석(WP109, para.58)에서는 일반 공개된 것 이외에 널리 등기청에 접수된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11) WP109, para.59

112) WP109, para.63.

113) WP109, para.58.

또한 기업의 도산, 합병, 청산 등의 경우 상업등기부에 이를 나타내는 입법례도 있는 바,¹¹⁴⁾ 이러한 경우 등기청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7) 제11조 정보의 저장과 등기부를 통한 접근

제11조 정보의 저장과 등기부를 통한 접근

법은 등기신청자 또는 등기된 사업으로부터 수령한 정보 또는 등기담당자에 의해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며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상호연결된 등기 시스템(interconnected registry system)을 구성하여야 한다.¹¹⁵⁾

정보저장의 지향점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접근성이 있는(efficiency,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정보 및 시스템의 구성이다. 구체적으로 등기된 사업에 관한 인식 및 분류의 일관성(consistency in th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registered business)과 정보의 효율적이고 중복성 없는 수집(efficient, non-duplicative collection of information)이 중요하다.¹¹⁶⁾

본문중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ion)’은 모든 등기소 및 그 지점, 등기정보 저장소(all business offices, sub-offices and repositories of registry information)가 그 장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¹¹⁷⁾ 이에 따라 어디에서 정보를 수령하든지 정보내용은 유사한 품질을 갖추고 규격화되어 있어야 한다.¹¹⁸⁾

114) WP109, para.64.

115)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등기소들 및 등기정보 저장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조문안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116) WP109, para.66.

117) WP109, para.67.

118) WP109, para.68.

5. 제3장 상업등기청의 운용(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y)

(1) 서론적 고찰 - 온라인시스템의 필요성

제3장의 도입부에서는 온라인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상업등기 개혁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 등 향후 새로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¹¹⁹⁾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이기반 등기(paper-based registration)와 비교할 때 온라인 시스템이 정보의 완결성, 안전성, 시스템의 투명성, 기업의 법령준수 확인,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정보 저장 억제, 표준양식의 적용, 오류방지 등 어느 모로 보나 강점을 갖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¹²⁰⁾ 구체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의 장점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¹²¹⁾

- ① 등기소로부터 먼 곳에서 운영되는 소규모기업의 접근성 개선
- ② 다양한 등기단계(궁극적으로는 등기경료)에 소요되는 기업가의 시간 및 비용 절감; 등기부 운영에 관한 일상적 비용 절감
- ③ 다른 정부기관들로부터의 검증하는 정보요청 처리
- ④ 등기담당자들의 사기적 또는 부적절한 행위 가능성 축소
- ⑤ 등기담당자들의 실수에 따른 상업등기청의 책임 가능성 축소
- ⑥ 일반 운영시간 이외에도 등기 및 정보이용 접근
- ⑦ 등기된 기업가들과 거래하려는 다른 기업가들과 은행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상업등기청의 수익창출 기회 발생

119) WP109, para.11, 69는 분산장부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120) WP109, para.72.

121) WP109, para.72.

나아가 온라인시스템 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다면 등기청의 자료 저장공간관리 등 부담을 줄일 여지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안이슈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¹²²⁾ 현재 온라인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도입할 때의 고려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¹²³⁾

- ① 확장성(Scalability): ICT 인프라가 향후 늘어날 정보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종종 발생하는 정보 과부하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② 탄력성(Flexibility): ICT 인프라가 새로운 사용자 및 시스템 요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의 기술에서 다른 기술로 데이터가 이전될 때에 이를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 ③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다른 정부기관 또는 온라인 모바일 결제포털 등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 ④ 비용(Costs): ICT 인프라는 최초 도입시뿐 아니라 그 유지 관점에서도 비용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 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온라인시스템 관련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사업을 중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시스템의 소유권을 갖거나 소스코드에 관해 무제한적인 라이선스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시스템 도입으로 종이기반 시스템은 폐기할 것인지 여부이다. 양 시스템 병존 시 비용이 많이 들고 상호 접수 효력의 우위 등에 관한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게 된다. 병존할 경우에도 종이 신청분을 스캔처리하는 등 이를 통합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¹²⁴⁾

122) WP109, para.76.

123) WP109, para.77.

124) WP109, para.87.

(2) 제12조 전자, 서면 또는 혼합형 등기

제12조 전자, 서면 또는 혼합형 등기

법은 효율적 상업등기의 최적수단은 전자적인 것임을 규정해야 한다. 만약 전자적 서비스의 전면도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접근은 현재 해당국의 기술인프라 및 제도적 시스템과 법제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실행되어야 하고, 인프라 발전에 따라 확장되어야 한다.

전자등기 시스템은 전자신청(electronic filing), 기존정보활용 양식(repopulated forms¹²⁵)을 기반으로 한다.¹²⁶ 이러한 전자등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등기신청자는 등기신청, 정기보고서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¹²⁷ 등기당국 입장에서도 모니터링 등 업무처리가 수월해진다.¹²⁸ 즉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미리 자동화된 경고를 보내고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제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¹²⁹ 특히 재무적 정보와 관련하여 그 포맷을 디지털화하면 취합 및 분석이 용이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¹³⁰

(3) 제13조 전자문서와 전자인증수단

제13조 전자문서와 전자인증수단

법은

- (a)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다른 동등한 인식수단의 사용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하고,
- (b)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유효성과 집행가능성이 부인될 수 없고 이들이 종이문서 등 이에 대응되는 것과 기능적으로 동등하다는 원칙에 의하여 위 사용을 규율하여야 한다.

125) 이는 이미 입력된 정보가 새로운 신청서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등기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항만을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이 훨씬 용이해진다. 관련 설명으로는 WP109, p.28. 각주 44 참조.

126) WP109, para.88.

127) WP109, para.88.

128) WP109, para.89.

129) WP109, para.91.

130) WP109, para.90은 이른바 machine-readable format(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or XBRL 등)을 이용할 경우의 편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자문서와 전자인증에 관한 규율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른바 기술적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과 기능상 동질성(functional equivalence)이다. 즉 전자적 수단과 종이에 기반한 수단 간 동등한 취급(equal treatment between electronic and paper-based communic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¹³¹⁾ 다만 이 부분은 상업등기에 고유한 것은 아니므로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2001),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005) 등 기존 입법의 범리에 따르게 된다.¹³²⁾

(4) 제14조 상업등기 및 다른 기관에의 등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14조 상업등기 및 다른 기관에의 등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¹³³⁾

법은 단일 인터페이스(single interface) 기능을 관장하는 공적기관 지정을 포함하여 상업등기 및 다른 기관에의 등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 (a) 전자적 플랫폼 또는 실제 사무실로 구성될 수 있고,
- (b) 상업등기청, 과세기관, 사회보장기관 등을 포함하여 동일 정보를 요구하는 최대한 많은 공적기관들의 서비스를 통합하여야 한다.

(가) 개념

원스톱 샵이란 기업가들로 하여금 창업을 위해 각기 다른 정부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군데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취합하도록 하는 경우 그 하나의 연결점을 가리킨다.¹³⁴⁾

131) WP019, para.92.

132) 상세한 사항은 http://www.UNCITRAL.org/UNCITRAL/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html. 참조.

133)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c)항을 신설하여 공적기관간 정보교환을 부연설명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문안은 “[such an interface] should provide for connectivity of all authorities with which a business is required to register and provide for the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business among the authorities as well as the use of a single, integrated application form for registration any payment to those authorities and a unique identifier”이다.

134) WP109, para.94는 “One-stop shops are single outlets where entrepreneurs receive all of the information and

(나) 적용범위

원스톱 샵에서의 ‘각기 다른 정부기관’은 상업등기청 이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정부기관을 포괄한다. 과세관청, 사회보장기관, 사법기관(justice), 고용관련기관(employment),¹³⁵⁾ 통계정보 수집기관, 인허가 담당기관¹³⁶⁾ 등이 그 예이다. 원스톱 샵은 나아가 투자, 상장폐지 절차, 관보예의 공고, 지적재산권, 수출입등록, 여행문제, 국유자산 관리 등에 관하여도 조언을 줄 수 있고, 전기 등 설비와 은행서비스에 관한 접근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¹³⁷⁾

(다) 실현방식

제1분과위원회는 원스톱 샵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³⁸⁾ 먼저 이른바 단일 출입문 방식(one-door approach)이다.¹³⁹⁾ 이 방식 하에서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장소에 각 기관의 대리인들이 모여 있게 된다. 기업가는 창업을 위해 위 장소에서 각 대리인들과 접촉한다. 이 때 위 각 대리인들은 상호 연결성을 갖는바, 구체적으로 각 대리인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각 대리인의 주된 사무소와의 관계에 관하여도, 위 대리인이 현지에서 등기/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주된 사무실로 전달하는 역할만을 갖는지의 문제 등 책임(accountability)의 소재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forms they need in order to complete the necessary procedures to establish their business rather than having to visit several different government authorities”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이를 앞의 정의조항에 맞추어 “One-stop shops enable entrepreneurs to receive all of the information and forms they need in order to complete the necessary procedures to establish their business through single outlets rather than having to visit several different government authorities”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135) WP109, para.93.

136) WP109, para.95.

137) WP109, para.95.

138)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단일 윈도우 방식이 더 바람직하므로 그 순서를 단일출입문 방식보다 먼저 기술하기로 합의하였다.

139) WP109, para.97.

두 번째 방식은 단일 윈도우 방식(one window or one table approach)이다.¹⁴⁰⁾ 여기에서는 신청절차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기업가는 창업에 필요한 문서 및 정보를 원스톱 샵 관리자(one-stop shop administrator)에게 전달하는바, 그는 각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위 문서 등을 수령하게 된다. 위 문서 등은 전자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각 기관에 배포된다. 각 기관들 사이에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양해각서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조정기관(coordinating entity)을 설치하는 방식이다.¹⁴¹⁾ 이러한 체제 하에서 기업가는 먼저 상업등기를 마친 다음 추가적 등기/등록을 위해 조정기관에 신청하게 된다. 신청인의 추가 신청부담은 크지 않고 기존 상업등기청에 관한 별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새로운 조정기관 설치를 위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위 세 가지 방식에서 보듯이, 원스톱 샵을 위하여 국가가 통합기관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각 기관들은 기능적 독자성(functional autonomy)을 가진 상태에서 단일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 족하다.¹⁴²⁾ 다만 원스톱 샵은 상업등기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원스톱 샵을 관장하는 조직은 상업등기를 관장하는 기관과 같은 것일 수 있다.¹⁴³⁾ 입법례를 보면 행정조직이 상업등기를 관장하는 경우 원스톱 샵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다. 반면 사업기관의 행정작용으로서 상업등기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원스톱 샵 기능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다.¹⁴⁴⁾

이렇듯 원스톱 샵 도입시 통합적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 입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시에 과세, 사회보장 관련 등록은 강제적이지만 상업등기는 임의적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¹⁴⁵⁾ 원스톱 샵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 관한 예산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140) WP109, para.98.

141) WP109, para.99.

142) WP109, para.100.

143) WP109, para.102.

144) 상공회의소, 정부위원회, 규제기관(Chamber of commerce, government commission, regulatory authorities) 등인 경우. WP109, para.102.

145) WP109, para.103.

(라) 정보공유

윈스톱 샵에서 있어서는 공적기관들 사이의 기관간 상호운용성(institutional interoperability)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그 점에서도 고유 등기번호, 단일 양식 활용이 필요하다.¹⁴⁶⁾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보가 하나의 양식에 포괄 제출되면, 수령처에서 각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이후 각 기관의 승인 사항이 다시 위 수령처를 통해 기업가에게 전달되는 국가들도 있다.¹⁴⁷⁾ 나아가 정보공유를 넘어 공용 데이터베이스(common database)¹⁴⁸⁾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입법례에서는 각 기관에게 공용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 접근권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위 공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관한 임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¹⁴⁹⁾

(5) 제15조 고유 등기번호 이용

제15조 고유 등기번호 이용

법은 각 등기된 사업에 고유 등기번호가 배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고유 등기번호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¹⁵⁰⁾

- (a) 등기번호는 일련의 숫자에 의한(numeric) 또는 글자와 숫자가 결합된(alphanumeric) 기호(character)로 구성되어야 한다.
- (b) 등기번호는 이를 부여받은 사업에 고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 (c) 등기번호는 변경불가능하고 관련 사업이 폐쇄된 이후에도 재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가) 고유 등기번호의 의의와 필요성

고유 등기번호는 하나의 사업에 관하여 부여되는 고유한 인식 기호(single unique

146) WP109, para.100.

147) WP109, para.100.

148)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공용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을 공용 플랫폼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149) WP109, papr. 101.

150) 한편 제30차 회의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적 주체에 대하여도 등기번호가 부여될 가능성을 추가 규정하기로 하였다.

identification number)를 뜻한다.¹⁵¹⁾ 번호(number)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제15조 (a)항에 나타나듯이 숫자 이외에 글자와 숫자의 결합도 가능하다.

고유 등기번호 사용의 장점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된다.¹⁵²⁾ 먼저 정부 입장에서는 신규 또는 기존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관련 기업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들이 별도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 정부지원 등이 중복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바, 고유 등기번호는 이 점에서도 효용이 있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별개 등록번호 등을 관리하는 각 정부기관을 상대할 경우 발생할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기업가의 거래상대방 등의 입장에서도 고유 등기번호의 사용은 모든 정보를 결합하여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유익한 것이다.

(나) 고유 등기번호의 부여 방식

제15조 (a)항은 등기번호의 구성방식에 대하여 최소한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각국이 나름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리를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⁵³⁾ 제15조 (c)항이 규정하듯이 고유 등기번호는 기업 설립시에 최초로 부여되고 이후 변경되지 않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재배정되지 않는다.¹⁵⁴⁾

고유 등기번호 부여의 주체는 상업등기청일 수도 있고 또는 과세기관이나 통합기관일 수도 있다.¹⁵⁵⁾ 예컨대 상업등기 시에 고유 등기번호가 부여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 의해 공유 등기번호가 부여된 다음 상업등기 등 관련기간에 공유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¹⁵⁶⁾ 다만 각 기관이 중복하여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방지해야 하는바,¹⁵⁷⁾

151) WP109, para.106.

152) WP109, para.108.

153) WP109, para.107.

154) WP109, para.107.

155) WP109, para.115.

156) WP109, para.115.

157) WP109, para.110.

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중앙 데이터베이스(centralized database)가 필요하게 된다.¹⁵⁸⁾ 종이 기반 시스템이 아닌 전자등록 시스템 하에서 고유 등기번호 제도 운영이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등록 시스템이 고유 등기번호 제도의 전제 요건은 아니다.¹⁵⁹⁾

(다) 법제 도입시의 유의사항

제도 개혁의 전제로서 각 기관들 사이의 정보공유와 기업관련자들의 수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¹⁶⁰⁾ 또한 고유 등기번호 운영을 위해서는 각 공적 기관들의 임무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¹⁶¹⁾ 고유 등기번호 도입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정보의 중복요청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상업등기기관, 과세기관, 사회보장기관의 협의는 필요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윈스톱 서비스의 대상인) 통계기관, 연금 등 기관들과의 논의도 필요하다. 한편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고유 등기번호를 부여할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 및 사회보장기관의 경우 자연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인인 경우 개인적 자격과 사업적 자격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유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¹⁶²⁾

고유 등기번호 관련 법제 도입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¹⁶³⁾

- ① 고유 등기번호를 배정하는 기관의 특정(Identification of the authority charged with allocating the unique identifier)
- ② 사업설립에 관한 기관에의 등록 이전 또는 직후의 고유 등기번호 배정(Allocation of the unique identifier before or immediately after registration with the authoritie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158) WP109, para.114.

159) WP109, para.111.

160) WP109, para.112.

161) WP109, para.112.

162) WP109, para.109

163) WP109, para.113.

- ③ 고유 등기번호에 연결된 정보들의 리스트. 최소한 이름, 주소 및 사업형태를 포함한다
(Listing the information that will be related to the identifier, including at least the name, address and type of business)
- ④ 고유 등기번호 및 관련 정보의 이용과 기업가에 대한 정보요청 제한에 관한 공적 기관들의 법적 임무(The legal mandate of the public authorities to use the unique identifier and related information, as well as any restrictions on requesting information from businesses)
- ⑤ 공적기관들과 민간에서의 등록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registered information by public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 ⑥ 관련 공정기관들 사이의 상업등기와 그 수정에 관한 의사연락(Communication of business registration and amendments among the public authorities involved)
- ⑦ 운영을 종료한 사업의 등기폐쇄에 관한 의사연락(Communication of deregistration of businesses that cease to operate)

(6) 제16조 고유 등기번호의 배정

제16조 고유 등기번호의 배정

법은 상업등기청이 상업등기 시에 또는 지정된 기관이 등록 이전에 고유 등기번호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발급된 고유 등기번호는 해당 등기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공적 기관들 사이에서 이용가능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공적 의사소통에 이용되어야 한다.

고유 등기번호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기관간 정보공유의 매개체 역할이다. 이러한 공유에는 국내 공적기관간 공유뿐 아니라 국제적 기관 공유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정보는 더 신뢰가능한(more dependable) 것이 된다.¹⁶⁴⁾ 기업조직 형태에 따라 명

164) WP109, para.118.

칭을 부여하는 시스템(a system of business prefixes)을 갖춘다면, 타국의 기업형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간 정보공유에 도움이 될 것이다.¹⁶⁵⁾

(7) 제17조 고유 등기번호의 실행

제17조 고유 등기번호의 실행

법은 고유 등기번호 이용 시스템을 도입할 때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상업등기청 및 고유 등기번호와 연결된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공적 기관들의 기술적인 인프라들 사이에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있다; 그리고
- (b) 기존 인식번호는 고유 등기번호에 연결된다.

(a)항이 나타내는 상호운용성은 고유 등기번호의 핵심적 내용이다. 데이터를 교환하고 해석하는 기술 인프라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정보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고 보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의미상의 상호운용성(semantic interoperability)도 중요하게 된다.¹⁶⁶⁾ 각국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하여 (i) 공통의 정의 및 용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common definitions and terminology)와 (ii) 적절한 기술 표준 및 포맷의 발전(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technology standards and formats)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¹⁶⁷⁾

(b)항은 기존 인식번호와 고유 등기번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등기번호 체제가 도입될 때 기존 인식번호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세무상 사업자 등록번호는 대부분의 사업에 필수적인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함 없이) 기존 사업자 등록번호를 고유 등기번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¹⁶⁸⁾

165) WP109, para.119.

166) 따라서 의미상의 기술(Semantic description)이 모든 관련자(stakeholder)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WP109, para.117.

167) WP109, para.117.

168) WP109, para.116.

(8) 제18조 공적기관간 보호정보의 공유**제18조 공적기관간 보호정보의 공유¹⁶⁹⁾**

법은 고유 등기번호 체제 하에서 공적기관간 보호정보 공유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

- (a) 규칙은 공적기관간 보호정보 공유 관련 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 (b) 규칙은 공적기관으로 하여금 그 법령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보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 (c) 규칙은 공적기관으로 하여금 그가 법령상의 권한을 갖는 사업에 대하여만 보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정보인 경우 프라이버시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는 별도의 보호정보 공유 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바, 여기에는 어떠한 기관이 관여하고, 공유되는 정보는 무엇이고, 공유목적은 무엇이고, 정보주체는 이러한 공유 목적을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보호정보의 기관간 공유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¹⁷⁰⁾

6. 제4장 사업의 등기(Registration of Business)**(1) 제19조 등기방법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성****제19조 등기방법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성**

법은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절차 및 관련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도록 하고, 쉽게 검색가능하도록 하고, 무료이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원래 상업등기를 실행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허가주의(approval system¹⁷¹⁾)과 신고주의

169)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b), (c) 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170) WP109, para.120.

171) 허가주의 하에서는 통상 법원이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법원기반 등기시스템(court-based registration system)으로 부를 여지도 있으나, 실제 법원이 등기사무를 사법적 업무로서 관여하지는

(declaratory system)의 두 가지가 있다.¹⁷²⁾ 전자는 (변호사, 공증인 등 매개자에 의한) 사전적 검증(ex ante verification)을 중시하는 반면 후자에는 이러한 검증이 없다. 전자는 부실등기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등기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제3자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고, 후자는 등기담당자의 부적절한 재량행사를 배제하면서 등기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¹⁷³⁾ 분과위원회에는 어느 한 방식이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19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 관련 정보는 가이드라인, 지침서(tutorial)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고 또는 강좌나 이러닝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¹⁷⁴⁾ 나아가 외국어도 등기신청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⁷⁵⁾

(2) 제20조 등기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사업

제20조 등기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사업

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모든 크기 및 형태의 사업체가 등기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 (b) 필수적으로 등기가 요구되는 사업체의 형태

사업체의 조직 형태에 따라 등기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를 제외한 사업에 관하여 등기는 선택사항이다. 어떠한 사업조직에 등기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각국이 결정한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회사 및 이에 유사한 조직에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예도 있다.¹⁷⁶⁾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검증기반 시스템(verification-based system) 또는 법원감독 하의 시스템(systems under the oversight of the judiciary)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WP109, p.39 각주 60.

172) 물론 중간적인 형태의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WP109, para.122.

173) WP109, para.123.

174) WP109, para.128.

175) WP109, para.126.

176) WP109, para.131.

필수적 등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조직 형태이더라도 등기를 원하는 경우 등기를 허용해야 한다. (i) 상호의 보호, (ii) 대출에의 접근, (iii) 추가적 성장기회, (iv) 대중 및 시장에 대한 노출, (v) 개인자산과 사업자산의 분리(법에서 이를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이 그 사유일 수 있다.¹⁷⁷⁾ 일단 자발적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내용 등 동일한 등기 규제를 받게 된다.¹⁷⁸⁾

(3) 제21조 등기에 필요한 최소정보

제21조 등기에 필요한 최소정보

법은 적어도 아래 사항은 포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첨부서류의 최소한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 (a) 상호
- (b) 사업이 연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소 또는 만약 그 사업이 일반적 주소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지리적 위치의 정확한 기술
- (c) 등기신청자의 인적 사항
- (d) 사업을 대표하여 서명할 권한을 갖는 자(들) 또는 사업의 법적 대표자(들)의 인적 사항; 그리고
- (e) 등기되는 사업의 법적 형태와 만약 이미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던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

이는 필수적으로 제출될 정보에 관한 조항이다. 이를 너무 확대하는 경우 소규모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¹⁷⁹⁾ 각국의 형태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본납입증명, 해당 기업이 행하는 영리행위의 유형, 비현금자산에 관한 협의사항(proof of the share capital, information on the type of commercial activities engaged in by the

177) WP109, para.130.

178) WP109, para.130.

179) WP109, para.137.

business, and agreements in respect of non-cash property)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¹⁸⁰⁾ 나아가 투명성의 관점에서 실질 주주 내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¹⁸¹⁾ 위 (a)-(d)에 열거된 것 이외에 각국이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필수적 제출정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¹⁸²⁾

- ① 사업의 관리자, 이사, 집행임원 등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련된 자들의 이름 및 주소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ersons associated with the business, which may include managers, directors and officers of the business)
- ② 기업의 조직 또는 사업의 운영을 규율하는 규칙(The rules governing the organization or management of the business)
- ③ 사업의 자본구성에 관한 정보(Information relating to the capitalization of the business)

그밖에 등기시에 등기신청자 및 사업자들의 성별, 민족, 언어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필수제공사항으로 강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위 정보는 취합된 경우에도 통계적 자료로만 사용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¹⁸³⁾

(4) 제22조 정보가 제출되는 언어

제22조 정보가 제출되는 언어

법은 상업등기청에 제출되는 정보 및 문서가 특정된 언어(들)에 의해 표시되고 상업등기청이 결정하고 공고한 문자(character)에 의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80) WP109, para.137.

181) WP109, para.137.

182) WP109, para.135.

183) WP109, para.136.

국가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 이외의 것으로도 등기서류 제출 등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서약한 번역본(sworn translation)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¹⁸⁴⁾ 외국의 기업 등을 등기할 때에는 그 외국의 특정 문자(character)가 등기 국가의 그것과 다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이름 및 주소 등을 어떻게 공식 언어로 표현할 것인지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¹⁸⁵⁾

해당 국가에 두 개 이상의 공식 언어가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모든 공식 언어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등기청이 하나의 언어본만 수령하여 이를 번역해두는 방식도 있다.¹⁸⁶⁾ 특히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인 것은 후자이다. 이 때 공식 언어들 중 어떠한 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할지는 해당 사업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제23조 등기통지

제23조 등기통지

법은 상업등기청으로 하여금 가능한 빨리 어느 경우에도 부당한 지연 없이 등기신청인에게 사업의 등기가 유효한지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통지는 등기부의 완결성 및 안전성(integrity and security of the registry record)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¹⁸⁷⁾ 온라인 방식의 등기인 경우 온라인 통지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6) 제24조 등기통지의 내용

제24조 등기통지의 내용

법은 등기통지가 증명, 고지 또는 카드의 형태에 의할 수 있으며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184) WP109, para.139.

185) WP109, para.140.

186) 이는 최초의 정보 수령 뿐 아니라 그 정보의 수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WP109, para.141.

187) WP109, para.142.

- (a) 사업의 고유번호
- (b) 등기일자
- (c) 상호
- (d) 조직의 법적 형태; 그리고
- (e) 사업의 준거법

등기통지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서 등기통지는 적법하게 등기되었음에 관한 종국적 증거(conclusive evidence)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¹⁸⁸⁾

(7) 제25조 등기의 유효기간

제25조 등기의 유효기간

법은 등기가 사업폐쇄 시까지 유효함을 규정해야 한다.

등기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몇 가지 입법방식이 가능하다. 첫 번째가 최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그 경과로 등기효력이 당연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다.¹⁸⁹⁾ 특히 등기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소규모기업의 경우 위 유효기간을 잘못 도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단 상업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주체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하는 방식도 있다.¹⁹⁰⁾ 다만 이러한 경우 정보가 업데이트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중간적 형태로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최대 유효기간을 두는 방식도 있다. 전자의 경우 등기효력 상실에 따른 권리귀속 등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¹⁹¹⁾

188) WP109, para.143.

189) WP109, para.144.

190) WP109, para.145.

191) WP109, para.146.

권고안은 위 방식들 중 두 번째, 즉 별도의 유효기간을 일체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8) 제26조 등기의 시기 및 유효성

제26조 등기의 시기 및 유효성

법은

- (a) 상업등기청으로 하여금 등기 신청이 접수된 일시를 기록하도록 하고, 가능한 빨리 어느 경우에도 부당한 지연 없이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b) 사업의 등기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 (c) 등기가 등기부에 가능한 빨리 어느 경우에도 부당한 지연 없이 기재되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등기부에 기재된 때로 하는 방식과 접수시점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¹⁹²⁾ 법에서는 어느 방식에 의하는지 명확히 밝혀두어야 한다. 한편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 이전에도 상호가등기(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trade name)를 통해 상호를 미리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¹⁹³⁾

전자등기와 달리 종이 방식의 등기인 경우 지연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접수 후 등기가 완료되어야 할 기간을 법정해 둘 수 있을 것이다. 전자등기와 종이등기제도를 병용하는 경우 종이등기를 선택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지연가능성을 사전에 알려둘 필요도 있다.¹⁹⁴⁾

등기의 우선순위는 대체로 접수순서에 의하게 될 것이지만, 추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신속절차(expeditid processing)을 인정하는 입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⁹⁵⁾

192) WP109, para.148.

193) WP109, para.149.

194) WP109, para.151.

195) WP109, para.151.

(9) 제27조 등기신청의 각하

제27조 등기신청의 각하

법은 등기관에 관하여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각하해야 한다.
- (b) 등기관은 등기신청 각하시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서 각하사유를 알려야 한다.
- (c) 법령에 그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등기관은 스스로의 오류 및 등기신청서류상 정보의 부수적 오류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 [(d) 등기관은 실체적 사유에 근거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할 권한이 없다.]¹⁹⁶⁾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제도 중 신고주의(declaratory system)와 달리 허가주의(approval system) 하에서는 등기관 검증절차가 필요하므로 등기관의 권한이 더 크다. 다만 이 조문에서는 신고주의와 허가주의를 불문하고 신청 각하를 법에 따라 의율하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⁹⁷⁾

(b)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사유를 받은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¹⁹⁸⁾

(c)는 이른바 표기상 오류(clerical error)에 관한 것이다. 등기관 자신의 오류이든 아니면 등기신청인의 오류이든 마찬가지로의 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등기신청인의 사소한 표시오류에 대하여 까지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면 절차가 심각하게 지연되므로 이를 간단히 교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¹⁹⁹⁾ 다만 등기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정정 요건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정정내용이 등기신청인에게 통지되어 승인을 이루어진 다음 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196) 다만 이 (d)항은 제30차 회의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는 실체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97) WP109, para.152.

198) WP109, para.155.

199) WP109, para.153.

등기신청 정보가 부족한 경우 등기관은 추가정보 제공 등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법에서 명시해야 할 것이다.²⁰⁰⁾ 전자등기인 경우 일정 요건이 기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것이다.²⁰¹⁾

(10) 제28조 지점등기

제28조 지점등기

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지점등기가 의무적인지 아니면 허용되는지 여부
- (b) 다른 법조항의 정의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법등기상 지점의 정의; 그리고
- (c) 지점등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i) 지점이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는 경우²⁰²⁾
 - (ii) 다음을 포함하는 공개의 요건: 등기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지점의 이름과 지점 등기를 구하는 원래의 사업 또는 주된 사업조직의 법적 형태; 국가 또는 다른 관할기관이 발행한 원래의 사업 또는 주된 사업조직에 관한 설립증명서(proof of existence); 그리고
 - (iii) 법적으로 지점을 대표하는 자(들)에 관한 정보

기업이 지역적으로 확장할 때에 별도 법인격을 갖지 않는 지점의 설립은 자회사(subsidiary)에 비해 저렴하고 형식적 요건도 완화되는 것이 통상적이다.²⁰³⁾ (a)항은 아예 지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음을 고려하여 지점 등기를 각국의 입법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00) WP109, para.153.

201) WP109, para.154.

202) 다만 제30차 회의에서는 이 조항이 (a)항과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삭제하기로 하였다.

203) WP109, para.156.

(b)항은 등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한다. 등기 관련 법률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상업등기청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지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임의로 정의조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상 지점 개념과 부합하여야 하고, 등기목적에 필요한 지점의 특성(the features required by a branch of a business in order to register)을 기술하는 정도면 족할 것이다.²⁰⁴⁾

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기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경영진의 존재, 독립된 계정 유지, 본점과의 관계, 해외에서 본점이 사무실을 갖고 있을 것 등이 있다.²⁰⁵⁾ 특정 법인이 해외 여러 곳에 지점을 둔 경우 그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이 때 고유 등기번호(unique identifier)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²⁰⁶⁾ 한편 등기행정의 관점에서는 지점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단순히 사업행위지(place of business)로 인정되면 등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⁰⁷⁾

7. 제5장 등기 이후의 절차(Post Registration)

(1) 제29조 등기 이후 추가등기 대상정보

제29조 등기 이후 추가등기 대상정보

법은 등기된 사업이 등기 이후에 상업등기청에 적어도 다음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a) 최초로 등기할 당시 권고안 제21조에 의해 요구되었던 정보의 변경이나 수정 및
- (b)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회계보고(annual accounts) 등 정기보고서(periodic return)

등기되는 정보가 가급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어야 정보 가치가 증진될 수 있다.²⁰⁸⁾ (a)항은 원래 등기되었던 사항의 변경시 당연히 업데이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관련

204) WP109, para.157.

205) WP109, para.157.

206) WP109, para.158.

207) WP109, para.157.

208) WP109, para.160.

자의 이름 및 주소, 해당 기업에 대한 도산, 합병 등의 발생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²⁰⁹⁾

(b)항의 경우 각종 재무정보 등 정기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모든 규모 및 형태의 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 특히 소규모기업에 대하여는 강제하지 않되 재무정보의 등기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²¹⁰⁾ 소규모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기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매해 위 정기보고서 등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도 있다.²¹¹⁾

(2) 제30조 현상황 등기의 유지

제30조 현상황 등기의 유지

법은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청에 등기된 정보가 현상을 반영하도록 다음 사항 등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 (a) 등기된 사업에게 상업등기청에 등기된 정보가 계속 정확한지 보고하도록 촉진하고 어떠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리는 자동화된 요청을 보냄
- (b) 필요한 업데이트에 관한 공지를 상업등기청 사무실 및 지점에 게시하고, 상업등기청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전국 또는 지역단위 전자 또는 인쇄매체에 이를 정기적으로 알림
- (c) 등기의 현재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등기된 사업에 관한 정보 자료들을 특정함, 그리고
- (d) 등기된 사항의 변경을 접수한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지연 없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등기를 업데이트 함

상업등기상 정보의 현재성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식은 일정기간 단위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변동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

209) WP109, para.162.

210) WP109, para.161. 소규모기업은 강제되지 않더라도 향후 재원조달 등을 위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는 사업목적, 주요변경, 재무상태표 및 그 외의 사항, 재무적 현황 및 자금조달 필요성, 경영진의 구성 및 선임정책과 보수, 향후 전망, 수익과 배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WP109, p.50, 각주 77).

211) WP109, para.161.

상당한 비용,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소규모기업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²¹²⁾ 두 번째 방식은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용, 시간 측면에서는 첫 번째 방식보다 우월하나 불신고, 지연신고의 위험성이 있다. (a), (b)항의 경우 등기청이 계속 공지사항을 알림으로써 업데이트를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문서로 발송하기는 쉽지 않은바, 국가에 따라서는 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변경등기를 촉구하기도 한다.²¹³⁾ 다른 한편으로는 변동사항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신고, 지연신고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²¹⁴⁾ 공적기관 사이에 상호 정보를 연결한다면 정보의 현재성을 높일 수 있다. 통합된 인터넷 페이스 운영, 고유 등기번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¹⁵⁾

(d)항은 변경등기신청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다. 접수된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을 법에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종이방식의 신청이거나 또는 전자방식이지만 등기담당자의 추가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 부당한 지연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²¹⁶⁾

(3) 제31조 등기된 정보의 수정

제31조 등기된 정보의 수정

법은

- (a) 상업등기청으로 하여금 (i) 변경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경등기를 실행하도록 하고, (ii) 변경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날짜 및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iii) 부당지연 없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변경등기 신청자에게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음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 (b) 등기된 정보에 대한 변경등기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212) WP109, para.164.

213) WP109, para.164.

214) WP109, para.165.

215) WP109, para.166.

216) WP109, para.167.

변경등기의 효력발생 시점은 접수시가 아니라 실제 변경사항이 등기기록에 기재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¹⁷⁾ 변경등기의 방식은 종전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여기에 추가기재(added to the registry record)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²¹⁸⁾

정보전송 직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전자등기와 달리 종이방식인 경우 등기변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전자등기시스템과 종이등기시스템을 병행하는 경우, 후자를 선택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연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한다.²¹⁹⁾

8. 제6장 접근성 및 정보 공유(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

(1) 제32조 상업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32조 상업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의 상업등기 서비스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등기신청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특히 성별에 기한 실질적 차별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바, 분과위원회에서는 제32조 이외에 별도의 조문을 추가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한편 많은 국가들은 일정 요건 및 절차에 의하는 이상 해당 국가의 시민이거나 거주하지 않는 자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허용하고 있다.²²⁰⁾ 구체적인 등기신청 요건으로서 최저연령, 절차요건만을 부과해야 한다. 절차요건으로서 특정한 수단 및 양식에 의할 것, 수수료를 납부할 것 등이 있다.²²¹⁾

217) WP109, para.168.

218) WP109, para.168.

219) WP109, para.169.

220) WP109, para.170.

221) WP109, para.171. 이러한 최소요건만의 부가가 the 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Rights Registry at paragraphs 95 to 99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업등기청은 등기신청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이때 인적사항의 확인은 통상의 상거래(day-to-day commercial transaction)에서 인정되는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인적사항 확인은 최초의 등기절차시에만 실행하면 될 것이다.²²²⁾

만약 등기신청자가 위 절차에 관한 객관적 요건(objective condition)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등기청은 그 사유를 신속하게 등기신청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 이외에 경우 제공된 정보의 실질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는 없다.²²³⁾

등기신청에 관한 상세한 절차조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제시될 수 있다.²²⁴⁾ 여기에는 보안 및 비밀유지, 타인에 의한 임의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후자는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것인바, 변경등기시 그 내용을 기업가에 통지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임의변경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²²⁵⁾

(2) 제33조 대중의 정보접근 가능성

제33조 대중의 정보접근 가능성

법은 모든 등기된 정보가 달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대중에 완전히 또한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청의 역할은 정보의 수집자(collector)이자 배포자(disseminator)이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해당 등기주체와 새로 거래하려는 자 뿐 아니라 등기주체의 기존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²²⁶⁾ 제33조는 기본적으로 등기 열람과 관련하여 상업등기청에 일체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²²⁷⁾

222) WP109, para.172.

223) WP109, para.173.

224) WP109, para.174.

225) WP109, para.174.

226) WP109, para.175.

227) WP109, para.177.

정보제공의 형태와 제공 범위는 각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²²⁸⁾ 가급적 비밀유지의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²²⁹⁾ 후술하듯이 수수료의 범위도 기본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받지 않거나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아야 할 것이다.²³⁰⁾

정보제공의 상대방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양식의 이용, 수수료 등의 요건만 있을 뿐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²³¹⁾ 정보이용자는 단지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것이므로 상업등기청이 그 인적 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수료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²³²⁾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이용 사유를 밝히도록 해서도 안 된다.²³³⁾

(3) 제34조 정보의 비공개

제34조 정보의 비공개

상업등기청에 등기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법은,

- (a) 등기 사업에 대한 어떤 정보가 보호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지 밝히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일반에 공개될 수 없는 정보 유형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 (b) 등기관이 어떠한 요건 하에 비밀성에 의해 공개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과 민감한 정보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문이다. 등기 정보 중 비공개와 공개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비공개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28) WP109, para.177.

229) WP109, para.175.

230) WP109, para.181.

231) WP109, para.175.

232) WP109, para.179.

233) WP109, para.177.

모두 공개하는 방식과 그 역의 방식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²³⁴⁾ 나아가 공적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칙이 필요하다.²³⁵⁾

(4) 제35조 운영시간

제35조 운영시간

법은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상업등기 서비스에의 접근이 전자적으로 제공된다면 이러한 접근은 항상 가능하다.
- (b) 상업등기 서비스에의 접근이 실제 사무실에서 제공된다면,
 - (i) 각 사무실은 일반에게 [각국이 정하는 일시] 동안에 열려 있다; 그리고
 - (ii) 각 사무실의 위치 및 운영시간에 관한 정보는 만약 상업등기청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 웹사이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널리 공지되며, 각 사무실에는 운영시간이 게시되어 있다.
- (c) 위 (a), (b)에도 불구하고 상업등기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유지, 보수작업을 위하여 등기서비스에의 접근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 (i) 등기서비스 중지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함
 - (ii) 중지사실 및 예상기간은 넓게 공지되어야 함; 그리고
 - (iii) 이러한 공지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중지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루어져야 함

(b)항 (i)의 경우 종이 방식에 의한 등기제도를 상정한 것으로서 그 운영시일은 통상적인 영업일 및 영업시간이면 될 것이다.²³⁶⁾ 가급적이면 등기접수 당일에 관련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수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예컨대 근무시간은 5시까지이지만 4시까지 접수 받는 방식), 일단 접수를 받고 그 효력은 다음날 발생시키는 방식, 등기는 하고 이에 대한 열람은 일정시간 후에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²³⁷⁾

234) WP109, para.183.

235) WP109, para.184.

236) WP109, para.186.

237) WP109, para.186.

(c)항은 등기서비스의 중지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중지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열거형과 예시형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확실성에 후자는 탄력성에 장점이 있다.²³⁸⁾ 구체적으로 화재, 홍수, 지진, 전쟁, 인터넷망 문제 등이 중지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제36조 등기신청, 등기사항 수정을 위한 직접적인 전자적 접근

제36조 등기신청, 등기사항 수정을 위한 직접적인 전자적 접근

법은 관련법령의 범위 하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한 경우, 상업등기청에 등기관 또는 신청자가 출석할 필요 없이 상업등기신청 및 등기된 사업정보 수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6) 제37조 등기검색을 위한 직접적인 전자적 접근

제37조 등기검색을 위한 직접적인 전자적 접근

법은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한 경우, 상업등기청에 신청자가 출석할 필요 없이 또한 상업등기청 직원의 도움 없이 등기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등기담당자들의 실수, 변경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²³⁹⁾ 일부 국가에서는 오로지 전자장치를 통하여야만 등기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²⁴⁰⁾ 다만 위 조항이 공증인 등 중개기관이 등기신청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²⁴¹⁾

238) WP109, para.187.

239) WP109, para.189.

240) WP109, para.190.

241) WP109, para.188.

(7) 제38조 정보접근성 향상

제38조 정보접근성 향상

법은 다음과 같은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등기된 사업에 관한 공개정보에의 접근은 촉진하여야 한다: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부과; 정보서비스 이용자에게 등록 요구 내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요구

상업등기를 통해 일반이 이용가능한 정보로는 임원들의 인적 사항, 연간 회계보고서, 사업의 부문 및 사업지, 사업등기 또는 설립증명서, 정관 등 운영규율 규정, 기업의 상호 및 연혁, 도산관련 정보, 자본, 등기서류의 인증본, 주요사항 통지 등이 있다.²⁴²⁾ 기업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법제인 경우 나아가 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²⁴³⁾ 실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는 사업에 관한 정보, 연간 회계보고, 수수료 산정기준이다.²⁴⁴⁾

정보접근성 차원에서 언어장벽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적어도 주요 지시사항과 양식은 이종의 언어(역사적 유대관계, 경제적 관련성,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두 번째 언어를 선택함)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²⁴⁵⁾

정보접근 방식으로 전자적 검색 이외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²⁴⁶⁾

- ① 전화를 통한 특정 기업 관련 정보 제공(telephone service)
- ② 특정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정기구독(subscription service)
- ③ 다양한 검색상품에 대한 주문 서비스(ordering service)
- ④ 배달 서비스(delivery service)

242) WP109, para.192.

243) WP109, para.193.

244) WP109, para.192.

245) WP109, para.196.

246) WP109, para.195.

정보제공 규모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대용량 정보(bulk information)가 문제된다. 이는 등기사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대량정보를 뜻한다. 정보요청 목적으로 상업적인 경우와 정책수립 목적 등 비상업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추가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등기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²⁴⁷⁾

(8) 제39조 등기된 정보에의 국제적 접근

제39조 등기된 정보에의 국제적 접근

법은 상업등기 시스템이 등기부상 공개정보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을 촉진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에서의 접근성 확보는 기업추적 및 운영 투명성 확인(to ensure traceability of businesses, transparency of their operations)과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조성(to create a more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을 위해서 필요하다.²⁴⁸⁾ 구체적으로 정보검색방식을 쉽게 하고, 등기 및 검색을 해당 국가 공용어 외에 다른 언어에 의하여도 가능하게 하는 등 방식이 있을 수 있다.²⁴⁹⁾ 해외 국가들과 협력하여 표준화 등을 진행하는 것,²⁵⁰⁾ 해외 이용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상업등기청과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²⁵¹⁾

247) WP109, para.197.

248) WP109, para.198.

249) WP109, para.199.

250) WP109, para.199.

251) WP109, para.199.

9. 제7장 수수료(Fee)

(1) 제40조 등기서비스에 관한 수수료

제40조 등기서비스에 관한 수수료

법은 등기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도 상업등기(특히 소규모기업의 상업등기)를 촉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등기가 등기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등기수수료를 설정할 때에는 등기제도의 지속적 운영과 등기이용의 원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40조는 등기수수료가 관련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비용보전(cost recovery)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인건비, 등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선 관리, 직원재교육, 등기이용자에 관한 홍보 또는 교육 등을 포함한다.²⁵²⁾

수수료는 등기를 할 때 또는 등기정보를 검색할 때 발생하는바,²⁵³⁾ 여러 기관이 관련된 경우 관련 수수료를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다(uniform approach).²⁵⁴⁾ 구체적인 수수료 부과정책은 다양할 수 있다. 일부 등기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를 공공재로 보아 정부가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비용보다 낮거나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²⁵⁵⁾ 한편 최초 등기시에만 수수료를 받고 이후 변경, 수정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도 있다. 이는 업데이트를 장려하고 초반부의 잉여수수료로 초기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²⁵⁶⁾

252) WP109, para.202.

253) WP109, para.200.

254) WP109, para.201.

255) WP109, para.203.

256) WP109, para.203.

(2) 제41조 등기된 정보에 관한 수수료

제41조 등기된 정보에 관한 수수료

법은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 (a)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는 일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 (b) 상업등기청에 의해 더 많은 처리절차가 필요한 정보서비스의 경우 그 요청된 정보 상품(information product)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를 받고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

분과위원회의 기본 입장은 수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서는 안되고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비용보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²⁵⁷⁾ 특히 이름, 주소과 같은 단순한 검색은 무료로 제공하되 복잡한 검색, 예컨대 다운로드, 정기구독 서비스, 대량정보 서비스(direct downloading, subscription service or bulk information services) 등만을 유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⁵⁸⁾

한편 이용자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수료 체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용 빈도, 사용목적, 급행서비스 여부, 개인이용자인지 여부, 대량정보 여부 등에 따른 분류를 생각할 수 있다.²⁵⁹⁾

(3) 제42조 수수료 금액 및 지불방법의 공개

제42조 수수료 금액 및 지불방법의 공개,

법은 등기 및 정보제공서비스에 관하여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가 있다면 그 내용 및 지불방식이 널리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257) WP109, para.205.

258) WP109, para.205. 원래의 초안에서는 부가가치(value-added)에 대하여만 추가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정 초안에 비용보전(cost recovery)개념이 들어오면서 대량정보 등에 대하여도 수수료 부과 가능하게 되었다.

259) WP109, para.205.

수수료 지불방식으로서 이용자 계정을 설정하여 지불하도록 할 수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⁶⁰⁾ 지불방식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공식적인 규정(formal regulation)에 의할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행정 가이드라인(informal administrative guideline)에 의할 수도 있다. 후자는 탄력성이 있는 반면 등기청이 이를 임의 인상할 위험성이 있다. 국가가 등기수수료 결정권한을 특정기관에 맡기는 방법도 상정 가능할 것이다.²⁶¹⁾

(4) 제43조 전자적 지급

제43조 전자적 지급

법은 전자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전자적 지급’에는 모바일결제 그밖의 현대적 기술들이 포함된다.²⁶²⁾ 이러한 전자적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 국내의 금융서비스 법제와의 부합성 이외에 여러 가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²⁶³⁾ 즉, (i) 누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ii)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에의 접근성, (iii)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iv) 이용자의 책임 및 문제의 해결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60) WP109, para.206.

261) WP109, para.206.

262) WP109, para.207.

263) WP109, para.207.

10. 제8장 책임 및 제재(Liability²⁶⁴) and Sanction)

(1) 제44조 오도하거나, 잘못되거나, 기만적 정보에 관한 책임

제44조 오도하거나, 잘못되거나, 기만적 정보에 관한 책임

법은 상업등기청에 의해 제공된 오도하거나(misleading), 잘못되거나(false) 기만적(deceptive)인 정보 또는 필요정보 누락에 대한 적절한 책임에 관해 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정보는 원래부터 잘못 제공된 정보와 수정하면서 잘못 제공된 것을 포괄한다.²⁶⁵) 다만 고의에 의한 것과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단순 실수에 의한 누락은 가벼운 처벌의 대상일 것이고, 특히 단기간 내에 보정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²⁶⁶) 일반적으로는 정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⁶⁷) 다만 시스템적으로 연간보고서 등 필요서류가 적시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점을 정기관보에 공개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²⁶⁸)

법적 책임 관점에서 볼 때, 등기된 정보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및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지(opposable to third parties)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²⁶⁹)

(2) 제45조 제재

제45조 제재

법은

(a) 정시에 정확하게 상업등기청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적절한 제재를 규정하여야 한다.

264) 사무국은 동 조항의 책임에는 민형사 책임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65) WP109, para.210.

266) WP109, para.210.

267) WP109, para.208.

268) WP109, para.209.

269) WP109, para.210.

- (b) 일정 기간 내에 의무불이행이 보정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 (c)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 규정들을 널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a)항과 관련하여 제재의 대표적인 방식은 벌금(fine)이지만 이를 상업등기청의 수익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상업등기청으로서는 등기준수를 촉진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²⁷⁰⁾ 의무불이행이 계속된 경우 벌금 누적 등으로 해산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²⁷¹⁾

다만 지나친 제재는 소규모기업으로 하여금 등기자체를 꺼리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양한 제재 유형을 도입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서 제재를 면제하는 등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²⁷²⁾

(3) 제46조 상업등기청의 책임

제46조 상업등기청의 책임

법은 상업등기청의 상업등기 또는 등기제도의 관리 내지 운영에 관한 잘못 또는 과실(error or negligence)로 인해 초래된 손실이나 손해(loss or damage)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지 규정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시스템이 완전히 전산화되었다면 국가의 책임은 시스템 오류에 한정될 것이다. 그러나 종이방식이거나 전자방식이라도 일부 수작업이 필요하다면 등기담당자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²⁷³⁾ 또한 현금수수료, 등기신청인의 결제정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널리 등기담당자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사 메커니

270) WP109, para.212.

271) WP109, para.212.

272) WP109, para.213.

273) WP109, para.215.

즘(audit mechanism)등 회계에 대한 제도적 통제(institutional financial control) 장치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²⁷⁴⁾

등기담당자는 등기절차(process) 안내 이외에 그 효력 등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적 조언을 한 경우 국가가 어떤 요건 하에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지 규정할 필요도 있다.²⁷⁵⁾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식에 관하여 그 재원을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수수료 수입에서 지출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²⁷⁶⁾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능액의 최대한을 설정해 둘 필요도 있다.²⁷⁷⁾

11. 제9장 등기폐쇄(Deregistration)

(1) 제47조 임의폐쇄

제47조 임의폐쇄

법은

- (a) 사업이 등기폐쇄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 (b)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폐쇄하도록 해야 하고,
- (c) 소규모기업의 등기폐쇄에 관하여는 간이한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기폐쇄란 사업이 더 이상 등기되지 않으며 그 운영을 중단하였음을 나타내는 등기부상 표기(notations has been made in the registry that it is no longer registered, and that it has ceased to operate)이다.²⁷⁸⁾ 등기폐쇄 사유는 자발적인 운영 중단 이외에 합병, 도산

274) WP109, para.218.

275) WP109, para.216.

276) WP109, para.219.

277) WP109, para.219.

278) WP109, para.220.

등도 있다. 등기청에게 도산 등으로 인한 등기폐쇄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약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행사요건은 명확해야 한다.²⁷⁹⁾

청산 또는 파산 시의 절차는 별도의 법에서 규율할 것이므로 입법지침은 그 외에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의 등기폐쇄를 규율한다.²⁸⁰⁾ 여기에는 다시 (i) 기업가의 신청에 의한 임의 등기폐쇄(voluntary deregistration)과 (ii) 등기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강제 등기폐쇄(involuntary deregistration)이 있다.²⁸¹⁾ 임의 등기폐쇄가 도산절차 등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²⁸²⁾ 어떠한 경우이든 등기폐쇄는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²⁸³⁾

(2) 제48조 강제폐쇄

제48조 강제폐쇄

법은 등기관이 등기폐쇄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이나 등기폐쇄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강제 등기폐쇄인 경우 이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 예컨대 정기제출의무의 위반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반으로 강제 등기폐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이익권을 부여하여야 한다.²⁸⁴⁾

(3) 제49조 폐쇄절차와 폐쇄의 시기 및 효력

제49조 폐쇄절차와 폐쇄의 시기 및 효력

법은

(a) 등기된 사업에 대하여 등기폐쇄가 문서로 통지됨을 규정해야 하고,

279) WP109, para.220.

280) WP109, para.222.

281) WP109, para.222는 강제 등기폐쇄를 striking-off라고 부르기도 한다.

282) WP109, para.223.

283) WP109, para.224.

284) WP109, para.222.

- (b)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에 따라 등기폐쇄가 공고됨을 규정해야 하고,
- (c) 등기폐쇄가 언제 효력을 발하는지 명시해야 하고,
- (d) 등기폐쇄의 법적 효력을 명시해야 한다.

등기청은 등기폐쇄 이전에 이를 웹사이트 또는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채권자, 지분권자 등이 이의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공고기간 동안 해당 사업은 적법하게 존속하게 된다.²⁸⁵⁾

등기부에는 등기폐쇄의 일시 및 폐쇄사유가 나타나야 한다. 등기청은 이러한 등기폐쇄 정보가 등기이용자들에 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²⁸⁶⁾ 등기청은 폐쇄된 등기에 관한 기존 정보를 법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보유하게 된다.

(4) 제50조 폐쇄의 복원

제50조 폐쇄의 복원

법은 등기관이 폐쇄등기한 사업을 복원해야 하는 요건 및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폐쇄등기의 복원은 폐쇄된 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기업의 신청은 등기청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이른바 *administrative restoration*) 또는 법원에 대해 별도 명령(*court order*)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등기청에 대한 신청인 경우 복원신청 기간이 짧은 등 더 엄격하게 요건이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²⁸⁷⁾

폐쇄등기가 복원되는 경우 폐쇄 없이 계속 기업이 존속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종전의 상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다른 기업에 배정되었다면 종전 상호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²⁸⁸⁾

285) WP109, para.225.

286) WP109, para.226.

287) WP109, para.228.

288) WP109. para.228.

12. 제10장 기록보존(Preservation of Records)

(1) 제51조 기록보존

제51조 기록보존

법은 폐쇄등기된 사업정보를 포함하여 등기신청자 및 등기사업에 의해 제출된 문서 및 정보가 등기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검색될 수 있도록 등기청에 보존되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등기기록은 장기보존하는 것은 단지 기록의 차원 뿐 아니라 과거의 법적, 재무적, 경영 이슈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²⁸⁹⁾ 일반적으로 등기기록은 영속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법으로 보존기한을 정할 수 있다.²⁹⁰⁾

보존기한은 실제 등기시스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자등기방식인 경우 하드카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에도 디지털화해 보관하므로 장기보존에 큰 문제가 없다.²⁹¹⁾

반면 종이방식이거나 혼합방식인 경우 별도의 물리적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장기보존을 위해 마이크로필름 촬영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²⁹²⁾

(2) 제52조 정보의 수정 및 삭제

제52조 정보의 수정 및 삭제

법은 법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을 규정해야 한다.

289) WP109, para.232.

290) WP109, para.229.

291) WP109, para.230.

292) WP109, para.23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관에 의한 표기상 오류(clerical error)인 경우에는 정정이 허용되는바, 정정의 내용은 해당 기업에 곧바로 통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등기관이 직접 정정하지 않고 오류의 내용을 해당 기업에 알린 다음 그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료로 정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²⁹³⁾

정보의 수정, 삭제에 관한 등기담당자의 임의적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i) 등기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등기담당자가 일체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ii) 폐쇄등기된 기업에 관한 정보를 법정기간 동안 보존하는 인프라 구축 등이 있을 것이다.²⁹⁴⁾

(3) 제53조 상업등기기록의 멸실 및 훼손방지

제53조 상업등기기록의 멸실 및 훼손방지

법은

- (a)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기록을 멸실,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해야 하고,
- (b) 등기기록의 재건을 가능하게 하는 백업장치를 구축하여 유지해야 한다.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등기기록의 복본(back-up copies) 등 장치를 갖추어둘 필요가 있다.²⁹⁵⁾ 또한 각종 범죄행위, 즉 전자기록에의 무단 접근 및 간섭, 정보의 탈취, 기기의 남용, 위조 등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²⁹⁶⁾

(4) 제54조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부터의 안전장치

제54조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부터의 안전장치

법은 전자 또는 종이방식 상업등기부에 포함된 정보의 처리, 수집, 이전 및 보호에 영

293) WP109, para.233.

294) WP109, para.234.

295) WP109, para.235.

296) WP109, para.236.

향을 미칠 수 있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밖의 사고로부터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등기기록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고려할 때 등기청의 운영중단은 짧고,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화되어야 한다. 사고에 대비하여 등기청은 사업계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²⁹⁷⁾ 한편 등기청의 관련 담당자들은 매년 등기기록에 대한 위협 및 그 대응방안을 보고해야 할 것이다.²⁹⁸⁾

297) 일부 국가에서는 이른바 ‘risk register’를 운영하기도 하는바 이는 등기청의 운영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업데이트하여 생성되는 동태적 문서(dynamic document)이다. 등기관은 이를 통해 등기서비스의 잠재적 위험과 그 경감방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WP109, para.237.

298) WP109, para.237.

V. 주요쟁점과 시사점

1. 원스톱 샵
2. 고유 등기번호
3. 필수적 등기사항
4. 수수료

V

주요쟁점과 시사점

제1분과위원회 작업의 일차적 관심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제도권 외에 머물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전산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관련 법리도 발전되어 있으므로, 기존 상업등기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향후 입법지침안을 반영한다고 할 때, (i) 소규모기업의 정의(입법지침안 정의조항),²⁹⁹⁾ (ii) 등기서비스 기준 도입(입법지침안 제7조), (iii) 창업시 상호선정에 대한 지원(입법지침안 주석 para.59), (iv) 종이기반 시스템의 완전 폐지 여부(입법지침안 주석 para.87), (v) 등기정정의 방식 및 효과(입법지침안 제27조 (c), 제45조 (b)), (vi) 폐쇄된 등기의 복원방식(입법지침안 제50조), (vii) 등기관련 국가책임의 요건 및 한도설정(입법지침안 주석 para.219) 등 기술적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⁰⁰⁾ 이하에서는 주요쟁점인 원스톱 샵, 고유 등기번호, 필수적 등기사항, 수수료의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299) 예컨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은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으로서 평균 매출액/연간매출액, 자산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제시하고 있다.

300) 그밖에 조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주석에서는 상업등기시 블록체인기술의 도입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WP109, para.11, 69).

1. 원스톱 샵

가. 입법지침안의 방향

입법지침안은 여러 군데에서 등기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샵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스톱 샵은 “사업이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등록(최소한 세무등록, 사회보장등록 뿐 아니라 상업등기 포함)에 관해 복수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 사무실, 전자적 플랫폼의 단일 인터페이스 또는 조직”으로 정의된다.³⁰¹⁾ 이에 관련된 기관들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하에서 통합된 신청방식 및 결제수단을 이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³⁰²⁾ 원스톱 샵에 관한 주된 조문³⁰³⁾인 제14조 (b)항은 최대한 많은 공적기관들의 서비스를 원스톱 샵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입법지침안 주석에 따르면 원스톱 샵의 설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른바 단일 출입문 방식(물리적으로 하나의 장소에 각 기관의 대리인 상주, 단일 윈도우 방식(관리자가 각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문서 등 수령), 별도의 조정기관 설치 방식이 그것이다.³⁰⁴⁾ 여기에서 보듯이 원스톱 샵이 상업등기, 세무, 사회보장기관의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능적 독자성을 가진 상태에서 단일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 족한 것이다.

나. 우리나라의 현황

입법지침안에도 나타나 있듯이 원스톱 샵은 물리적인 공간 뿐 아니라 인터넷 상 단일 인터페이스를 운용함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등기³⁰⁵⁾ 제도 일반을 먼저 검토한 다음 원스톱 샵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301) WP109, para.16.

302) WP109, para.16, 입법지침안 제14조 및 주석 참조.

303) 그밖에 입법지침안 제1조, 제10조 (d)도 원스톱 샵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304) WP109, para.97-99

305) 이를 전자등기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나, 법원에서 ‘인터넷 등기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법원행정처, 등기업무 전산화의 현황과 미래: 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 백서(2008) 등 참조.

(1) 우리나라의 인터넷 등기제도

(가) 개관

상업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식으로서 ① 서면제출 방식 이외에 ② 전산정보처리조작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을 규정한다.³⁰⁶⁾ ① 서면제출 방식은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즉, 인터넷으로 전자표준양식에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³⁰⁷⁾

② 방식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등기소는 1994년부터 시작된 등기업무 전산화의 일환으로 2007년에 구축된 것인바, 부동산 등기 등 민사상 등기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상업등기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검토한다. 현 시스템상 상업등기법상 등기 대상은 대부분 인터넷 등기 대상이지만, 상호, 지배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 합자조합은 인터넷 등기로 진행할 수 없다.³⁰⁸⁾

(나) 인터넷 상업등기 절차

구체적 절차를 최초 사업개시(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차상 개인상인과 회사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상인의 경우 사전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 및 사용자등록접수를 하고 접근번호 16자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위 접근번호 및 공인인증서(금융기관 등 발행)를 활용하여 사용자등록 및 로그인을 하고 전자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면을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면 된다(<그림 1> 참조).

반면 회사의 경우 사전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

306)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307) 전자표준양식(e-form) 방식은 방문에 의한 등기신청서 접수를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템이다. 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선택사항), 등기신청서 출력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나 실제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e-form 등기신청서와 필요 첨부서면을 공무원에 제출하는 시점이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3001001001.jsp>.

308) <http://www.iros.go.kr/re1/EURIndex.jsp>

즉 회사 설립관계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실명확인을 통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³⁰⁹⁾

<그림 1> 인터넷 상업등기 흐름도³¹⁰⁾



(2) 우리나라의 원스톱 샵

(가) 개관

우리나라는 이미 원스톱 샵 개념과 유사한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 6. 8. 도입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5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09) 이후의 회사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의 실무는 회사설립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있다. 단점으로서 위 법인공인인증서는 발급 시점의 대표자 자격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표자 변경 이후에도 새로운 대표자가 기존의 법인 공인인증서를 인수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혁준 외, 각국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대법원 연구용역보고서 (2017), 177-178면). 반면 법인 전자증명서(상업등기법 제17조, 상업등기규칙 제43조 내지 제50조), 즉 인터넷 등기 전용의 법인 공인인증서는 대표자 자격 상실 등 법인 등기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상업등기규칙 제48조 참조) 장점이 있다.

310) <http://www.iros.go.kr/re1/EURIndex.jsp>.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즉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의하면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① 상업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②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업무, ③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업무,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위 입법에 따라 2010년부터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국세청의 국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세망, 4대보험 연계시스템을 통합하여 온라인(<https://www.startbiz.go.kr>)에서 회사설립 업무를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의 운용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설립할 수 있는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상법상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³¹¹⁾ 다만 구성원(주주 또는 사원)은 10인까지만 가능하고,³¹²⁾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주식회사³¹³⁾ 발기설립만이 가능하다.³¹⁴⁾

대표자 및 구성원 명의의 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인감의 인영, 정관 등만 구비되면 관련 절차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회사설립등기가 진행되는바, 이 때에 주식회사 자본금의 확인은 발기설립대표자의 개인명의 통장에 관한 온라인 잔액증명으로 가능하다. 법인인감신고는 그 인영을 스캐너로 찍어서 업로드 하는 방식에 의한다. 설립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1-3일 중으로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등기관의

311)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사용자 매뉴얼(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이라고 함), 2, 7면 (<http://www.startbiz.go.kr/cfs/html/comBuild/StartbizManualPop.html>).

312)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2면.

313) 원래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주식회사인 경우 정관인증이 필요하지 않고(제292조),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제318조 제3항), 이사를 2인 이내로 둘 수 있고(제383조),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 등(제409조 제4항) 상법상 특례가 인정된다.

314)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8면.

승인 후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절차가 진행된다.³¹⁵⁾ 서류미비 등으로 국세청에서 특히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마지막으로 4대 사회보험신고가 이어진다.³¹⁶⁾ 이는 재택창업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는 방식에 의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3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5일 이내에 해당 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절차의 흐름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흐름도 예시³¹⁷⁾



315) 원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간이화한 것이다.

316)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자라면 4대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적이다. 한편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제출의 무가 있는 취업규칙도 위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317) 중소벤처기업부, 매뉴얼, 30면.

다. 시사점

입법지침안상 원스톱 샐은 최소한 상업등기, 세무상 등록, 사회보장 등록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실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³¹⁸⁾ 이러한 점에서 상업등기, 세무상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신고를 결합한 우리나라의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은 이미 위 요건을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점이 있다.

첫 번째로 개인상인의 경우이다. 우리 법제상 영업을 개시한 개인상인이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신고를 행할 의무가 있으나, 상호를 등기하거나³¹⁹⁾ 지배인을 두려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상업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중 상업등기 영역은 ‘회사설립 등기’에 한정되고, 개인상인은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개인상인으로 창업하여 사업자등록 및 4대 사회보험신고를 한번에 하려는 경우이거나 나아가 상호, 지배인 등기를 하려는 경우는 위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 시스템의 운영 범위를 넓혀서 회사설립 없이 사업자등록 및 4대 사회보험신고를 하려는 개인상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개인상인이 필히 마쳐야 하는 사업자등록은 이미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므로³²⁰⁾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인터넷등기소 업무를 위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에 연결하여 창업시 상호등기, 지배인 등기 등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현재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은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숫자가 10인으로 제한되고,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한정된다. 물론 이렇듯 소규모회사인 경우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에 더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지침안의 원스톱 샐의 개념은 회사규모를 불문한 일반적인 것이다.³²¹⁾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 내에서 더 많은 회사를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내로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18) WP109, para.16의 원스톱 샐 정의 참조.

319) 상법 제18조 이하에 따르면 개인상인의 경우 상호 등기가 강제되지는 않으나 이를 등기한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320) http://www.nts.go.kr/info/info_01_02.asp

321) WP109, para.32 참조.

세 번째로 국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문제이다. 입법지침안의 원스톱 샵은 공적기관들 사이의 상호운용성(institutional interoperability)을 중요하게 생각한다.³²²⁾ 공유에 부적합한 민감한 정보³²³⁾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기관간 공유 폭을 넓히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지침안 제14조 (b)항은 ‘동일 정보를 요구하는 최대한 많은 공적기관들’의 서비스를 통합할 것을 주문한다. 그 예로서 사업인허가,³²⁴⁾ 지적재산권, 수출입등록, 전기 등 설비 등을 들고 있다.³²⁵⁾ 이러한 범위로까지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확장이 가능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2. 고유 등기번호

가. 입법지침안의 방향

입법지침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고유 등기번호의 배정방식, 유지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한다. 고유 등기번호는 해당 기업에 관한 정보 취합 및 업데이트와 각 공적기관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주석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번호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신 기존 세무상 등록번호를 고유 등기번호로 사용하는 방식도 예시하고 있다.³²⁶⁾ 세무상 등록번호는 대부분 사업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어느 방식이든 단일한 등기번호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각 기관이 기존에 운영하던 번호체제와의 연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제17조 (b)).

322) WP109, para.100.

323) 입법지침안 제18조.

324) WP109, para.63에 따르면 원스톱 샵이 인허가 자체를 처리해 주는 경우와 이에 관한 정보제공 및 담당기관 안내를 담당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회사설립이 마무리된 다음에 주무관청에 해당 업종에 대한 인허가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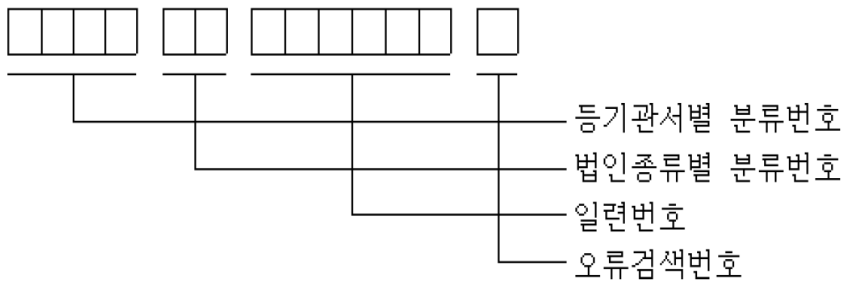
325) WP109, para.121.

326) WP109, para.116.

나.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상업등기,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에 각기 다른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상업등기의 경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법인등록번호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된다.³²⁷⁾ 법인등록번호는 등기관서, 법인종류, 일련번호 등을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구성된다.³²⁸⁾ 구체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³²⁹⁾



두 번째로 세무상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다.³³⁰⁾ 사업자등록번호는 ■■■■-■■■-■■■■■■■ 형태로 전체 10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첫 세 자리 중 첫 숫자는 각 시도별 지방국세청, 그 다음의 두 숫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번호이다. 중간에 두 자리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른 구분이다. 마지막 다섯 자리는 순차적으로 부여된 4자리 사업장 번호와 검증번호 한 자리로 구성된다.

327) 그밖에 상업등기부에는 ‘법인등기번호’라는 것도 있으나 이는 단순히 접수순서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고유번호와 무관하다.

328) 법인등록번호 규칙 제2조.

329) 법인등록번호 규칙 별표 1호.

330)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5조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규정한다.

세 번째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10자리 숫자에 각 보험식 별번호 한자리의 11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보험공단에서 9로 시작하는 준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다. 시사점

이미 상당부분 중복되는 세무상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관리번호 사이의 통합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상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는 숙고를 요한다. 개인상인의 경우 별도의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니 사업자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특정 기업에 하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고유 등기번호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는 과도적 조치가 필요하고, 기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정보가 새로운 고유번호에 따른 정보와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필수적 등기사항

가. 입법지침안의 방향

입법지침안 제21조 및 관련 주석은 설립시의 필수적 등기사항에 관해 규정한다. 지침안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i) 상호, (ii) 사무소, (iii) 등기신청자의 인적사항, (iv) 대표자의 인적사항, (v) 기업의 법적형태가 포함된다.³³¹⁾ 위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고 그밖에 각국은 입법을 통해 필수적 등기사항을 확대할 수 있다. 관련 주석은 그밖에 (a) 임원들의 인적사항, (b) 정관, (c) 자본구성을 필수적 등기사항으로 규정한다.³³²⁾

331) 그밖에 입법지침안 제21조 (d)항은 이미 등기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이 역시 등기신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332) WP109, para.135.

나.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상업등기 사항을 크게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 중 절대적 등기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게을리한 회사기업인 경우 업무집행기관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³³³⁾ 반면 상대적 등기사항은 등기 여부가 상인의 자유로운 뜻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다. 개인상인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채무불인수 등기, 상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적 등기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단 등기된 경우에는 그 변경, 소멸은 지체 없이 변경, 소멸등기를 해야 하므로(상법 제40조),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입법지침안은 창업시의 필수적 등기사항에 관해 규정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일생에서 요구되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상 절대적 등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⁴⁾

- ① 회사의 설립, 소멸, 근본적 변동에 관한 사항: 설립등기,³³⁵⁾ 해산등기,³³⁶⁾ 회사계속의 등기,³³⁷⁾ 합병 등기,³³⁸⁾ 합병무효의 등기³³⁹⁾, 주식의 포괄적 이전,³⁴⁰⁾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³⁴¹⁾ 조직변경,³⁴²⁾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³⁴³⁾
- ② 법인으로서의 회사의 독자성에 관한 사항: 회사의 상호,³⁴⁴⁾ 주소, 목적,³⁴⁵⁾ 공고방법,³⁴⁶⁾ 본점 및 지점의 설치³⁴⁷⁾ 등.

333) 반면 개인기업의 경우 별도의 제재조항이 없다.

334) 이 분류는 노혁준 외, 앞의 책, 149-150면에 따른 것이다.

335) 상법 제317조.

336) 상업등기법 제60조, 제73조

337) 상업등기법 제61조

338) 상법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62조 내지 제64조.

339) 상법 제238조

340) 상법 제360조의20

341) 상업등기법 제70조 내지 제72조.

342) 상업등기법 제65조 내지 제67조.

343) 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호.

344)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제289조 제1항 제2호.

345)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제289조 제1항 제1호.

346)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제289조 제1항 제7호.

347)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제289조 제1항 제6호,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4, 상업등기법 제54조 내지 제59조

- ③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사항: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의 인적사항,³⁴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의 인적사항,³⁴⁹⁾ 공동대표이사제도,³⁵⁰⁾ 일시이사,³⁵¹⁾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³⁵²⁾
- ④ 회사의 재무구조 및 주식에 관한 주요사항: 수권발행주식수,³⁵³⁾ 발행주식총수,³⁵⁴⁾ 자본금,³⁵⁵⁾ 액면금액,³⁵⁶⁾ 액면미달발행의 미상각액,³⁵⁷⁾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³⁵⁸⁾ 주식매수선택권,³⁵⁹⁾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³⁶⁰⁾ 주식양도제한 여부,³⁶¹⁾ 주식의 이익소각 조항,³⁶²⁾ 명의개서대리인.³⁶³⁾
- ⑤ 중요한 쟁송에 관한 사항: 회사설립무효판결,³⁶⁴⁾ 신주발행무효판결,³⁶⁵⁾ 감사무효판결,³⁶⁶⁾ 주식교환무효판결,³⁶⁷⁾ 합병무효판결,³⁶⁸⁾ 분할 또는 분할합병무효판결.³⁶⁹⁾

348)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349)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12호.

350)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351) 상법 제386조 제2항.

352) 상법 제407조 제3항.

353)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제289조 제1항 제3호.

354)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355)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356)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357) 상법 제426조.

358)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제7호(전환주식), 제351조(전환의 등기)

359)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3, 상법등기법 제69조.

360) 상법 제514조의2, 제514조의3

361)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2.

362) 상법 제317조 제2항 제6호.

363)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1호.

364) 상법 제328조, 제192조.

365) 상법 제430조, 제192조.

366) 상법 제446조, 제192조.

367) 상법 제360조의14, 제192조.

368)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8조.

369)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38조.

다. 시사점

입법지침안 제21조가 필수적 등기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상업 등기상으로도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다만 입법지침안에 따르면 개인상인의 상호도 필수적으로 등기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예 일정기준 이하의 개인상인의 경우 애초에 등기의무의 범위 밖으로 규정한다면,³⁷⁰⁾ 일률적인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를 강제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등기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해외에서는 상세한 재무정보를 담은 연간보고서까지도 필수적 등기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³⁷¹⁾ 다만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높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등기의무가 부과되는 절대적(필수적) 등기사항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등기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 등기사항을 넓히는 것이 낫다고 할 것이다.³⁷²⁾

4. 수수료

가. 입법지침안의 방향

입법지침안은 창업에 필요한 각종 등기수수료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비용보전(cost recovery)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설립등기 등에 관한 수수료가 등기청의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⁷³⁾ 소규모기업을 제도권 경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입법지침안의 입장에서 당연한 접근이다. 한편 등기검색에 관하여는 기업의 상호, 주소 등 간단한 검색은 무료로 제공하되, 대량정보서비스 등은 유료로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³⁷⁴⁾ 이 경우에는 사용빈도, 사용목적 등에 따른 차등적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³⁷⁵⁾

370) 입법지침안 제20조는 필수적으로 등기가 요구되는 사업체의 형태에 대하여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71) 홍콩의 경우가 그러하다. 홍콩의 입법례 및 실무에 관하여는 노혁준 외, 앞의 책, 135면 이하 참조.

372) 등기사항 확대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노혁준 외, 앞의 책, 147면 이하 참조.

373) 입법지침안 제40조.

374) 입법지침안 제41조.

375) WP109, para.205.

나. 우리나라의 현황

먼저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회사설립인 경우 서면신청은 30,000원, 전자표준양식은 25,000원, 전자신청은 2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실제 설립시에는 여기에 등록면허세,³⁷⁶⁾ 지방교육세,³⁷⁷⁾ 공증료³⁷⁸⁾가 비용으로 추가된다. 상세한 수수료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등기목적별 법인등기 수수료³⁷⁹⁾

대분류	소분류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 양식신청	전자 신청	비고
1. 합명·합 자·유한 책임·주 식·유한 회사·외 국회사 및 합자조합 의 등기	가. 회사 또는 합자 조합의 설립 등 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나. 본점(합자조합 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 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 소재 지에서 하는 본 점 이전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 점 이전등기의 신청수 료와 본점 이전과 동 시에 이에 부수하여 다 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의 그 등기 신청에 따 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 부하여야 함

376)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설립 등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참조.

377) 등록면허세납부의무자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별도의 지방교육세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78) 정관과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증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정관인증 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이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의사록 인증의 경우 건당 3만원이다. 공증인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 2항 참조.

379)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0>

대분류	소분류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 양식신청	전자 신청	비고
	다. 합병·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또는 존속회사에 관한 변경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 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 도 로 납부하여야 함
	마. 상호, 명칭, 본 점, 목적, 공고 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 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 등기	6,000원	4,000원	2,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 청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함
	바. 경정 및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의 변 경 등기	6,000원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 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 는 유류 발견 및 행정구 역·지번 변경, 주민등 록번호정정 등 을 원인 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 청수수료 없음
	사. 지점설치·이 전등기·동일 등기소 관할구 역내의 본점이 전 등기, 전환 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 외의 기타 등기	6,000원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 기의 경우에는 신청수 수로 없음

대분류	소분류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 양식신청	전자 신청	비고
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6,000원	4,000원		위와 같음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기 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위 1호를 준용함.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서면방문신청 수수료는 위 1호를 준용함.					
※ 합자조합 및 일부 등기목적은 현재 전자신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다음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및 열람³⁸⁰⁾과 관련하여,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1통에 1,000원, 등기기록 열람은 1통에 700원이다.³⁸¹⁾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통당 1,200원의 발급수수료가 적용된다.³⁸²⁾

다. 시사점

입법지침안 제41조 (a)항은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를 원칙적으로 일반에 무료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각주는 무료제공 대상으로 이름, 주소와 같은 기본적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열람서비스는 예외 없이 수수료 대상이다. 등기된 내용 중 일부 기본적 사항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380) 인터넷등기소에 의해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는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가 있고 2D바코드, 복사방지카드가 출력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반면 열람서비스의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381)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1001.jsp>

382) 20장이 초과된 경우에는 1장당 50원이 추가된다. 한편 민원창구의 무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를 이용하였다면 1,0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입법지침안 제41조 (b)항은 더 많은 정보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인 경우 필요비용을 반영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등기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통상적인 발급 및 열람서비스 이외에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상호검색 등이 있다.³⁸³⁾ 나아가 통계자료로서 회사설립 현황, 법인 본점이전 현황, 신설 주식회사 자본금 현황(이상 분기별 통계), 주식회사 자본금 현황, 주식회사 설립등기 후 경과기간 현황(이상 연별 통계)이 있다.³⁸⁴⁾ 향후 등기된 정보 및 그 통계를 다양한 형태로 일반에 제공하되, 이에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83)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1001.jsp>

384) <http://www.iros.go.kr/pos1/jsp/cms6/web1/view.jsp?menuid=001010005>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VI. 관련문제: UNCITRAL 유한책임조직에 관한 입법지침안

VI

관련문제: UNCITRAL 유한책임조직에 관한 입법지침안

상업등기 입법지침안 이외에 제1분과위원회가 별도의 작업으로서 단순화된 사업조직에 관한 입법지침, 즉 이른바 UNCITRAL 유한책임조직(UNLLO)에 관한 입법지침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다만 위 후자의 입법지침안은 전자와 달리 아직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초안의 주요 내용만 아래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상세한 논의는 후일로 미루기로 한다.

- 제1장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권고안 제1조 내지 제6조. UNLLO의 개념과 활동범위, 법인격, 유한책임 등.
- 제2장 UNLLO의 설립(Formation of the UNLLO): 권고안 제7조 내지 제10조. UNLLO의 설립시기 및 설립시 제출할 자료 등.
- 제3장 UNLLO의 조직(Organization of the UNLLO): 권고안 제11조 내지 제13조. UNLLO의 의사결정 방식 및 대표기관. UNLLO 구성원(member)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법정되어 강제되는 사항(즉 강행규범으로 규정되는 조항)의 범위.
- 제4장 UNLLO의 경영자(Managers): 권고안 제14조 내지 제15조. UNLLO 경영자의 주의의무와 의사결정 방식.
- 제5장 출연 (Contribution): 권고안 제17조 내지 제18조. 출연의 강제성 여부와 출연의 평등성.

- 제6장 분배(Distributions): 권고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분배의 기준 및 평등성. 위법 배당시의 환수.
- 제7장 권리이전(Transfer of Rights): 권고안 제22조. 구성원의 권리이전의 원칙적 허용과 제한가능성.
- 제8장 구조재편 또는 전환(Restructuring or Conversion): 권고안 제23조. 기존 UNLLO의 구조재편 및 전환의 방법.
- 제9장 해산 및 청산(Dissolution and Winding-up): 권고안 제24조. UNLLO가 해산되거나 청산되는 방식.
- 제10장 구성원 탈퇴(Dissociation or Withdrawal): 권고안 제25조. UNLLO 구성원이 UNLLO로부터 탈퇴하는 방식.
- 제11장 기록보관, 검사 및 정보개시(Record-keeping, Inspection and Disclosure): 권고안 제26조. UNLLO에서 보관의 대상이 되는 기록의 범위와 각 구성원의 정보접근권 등.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VII. 결 론

VII

결론

이 글에서는 UNCITRAL 제1분과위원회가 최종 독회를 마친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내용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입법지침안은 용어 정의 조항 및 전체 5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조문안 정리는 별첨자료 1 참조).

제1분과위원회의 주된 논의대상은 영세기업을 포함하는 소규모기업(MSME)이고, 이러한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또다른 입법지침안 작업인 UNCITRAL 유한책임 조직에 관한 입법지침안이다.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은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기업 전반의 등기, 등록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상업등기 입법지침안도 군데군데에서 소규모기업들의 창업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는 함을 강조하고 있다.³⁸⁵⁾

우리나라는 일찍이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등 소규모기업이 창업에 필요한 등기, 등록업무를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입법지침안이 강조하는 원스톱 샵을 인터넷 포털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의 관장 하에 정교한 상업등기시스템을 갖고 있다. 다만 입법지침안의 내용 중에서 향후 우리 실무 운용에 있어 참고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개인상인의 편의도모 문제이다. 위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은 상법상의 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다. 실제 많은 경우 창업은 회사설립을 의미하고, 제1분과위원회의 논의도 개인자산과 사업자산을 구분하는 조직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385) 입법지침안 제3조 (b), 제4조 (b), 제40조, 제47조 (c) 참조.

입법지침안의 주된 도입취지 중 하나는 제도권 외 경제(extralegal economy)에 위치하는 기업들을 제도권 경제(legally regulated economy)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회사설립 없이 사업자등록 및 4대 사회보험신고, 나아가 상호, 지배인 등 상법상의 등기를 하려는 개인상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위 재택창업지원 시스템은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숫자가 10인으로 제한되고,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한정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 내에서 더 많은 회사를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내로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국가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문제이다. 입법지침안의 원스톱 샵은 공적기관들 사이의 상호운용성(institutional interoperability)을 중요하게 생각한다.³⁸⁶⁾ 공유에 부적합한 민감한 정보³⁸⁷⁾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기관간 공유 폭을 넓히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입법지침안 제14조 (b)항은 ‘동일 정보를 요구하는 최대한 많은 공적기관들’의 서비스를 통합할 것을 주문한다. 그 예로서 사업인허가,³⁸⁸⁾ 지적재산권, 수출입등록, 전기 등 설비 등을 들고 있다.³⁸⁹⁾ 이러한 범위로까지 재택창업지원 시스템 확장이 가능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입법지침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하나의 기업에 관하여 등기, 등록관련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고유 등기번호 도입을 규정하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세무상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86) WP109, para.100.

387) 입법지침안 제18조.

388) WP109, para.63에 따르면 원스톱 샵이 인허가 자체를 처리해 주는 경우와 이에 관한 정보제공 및 담당기관 안내를 담당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회사설립이 마무리된 다음에 주무관청에 해당 업종에 대한 인허가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89) WP109, para.121.

여섯 번째로 등기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등기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 등기사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지침안 제41조에서 규정하듯이 기본적인 정보는 일반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등기정보를 여러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 발급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문헌 및 자료]

- 노혁준/최문희/이계정, 각국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대법원 연구용역보고서 (2017)
- 법원행정처, 등기업무 전산화의 현황과 미래: 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 백서 (2008)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사용자 매뉴얼
 (<http://www.startbiz.go.kr/cfs/html/comBuild/StartbizManualPop.html>),
<http://www.iros.go.kr>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UNCITRAL 회의 자료]

- A/CN.9/WG.I/WP.101, Draft legislative guide on key principles of a business registry
 (10 February 2017)
- A/CN.9/WG.I/WP.106, Draft legislative guide on key principles of a business registry
 (17 July 2017)
- A/CN.9/WG.I/WP.109, Draft legislative guide on key principles of a business registry
 (2 January 2018)
- A/CN.9/WG.I/WP.110, Reducing the legal obstacles fac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3 January 2018)

[해의 문헌 및 자료]

- World Bank Group Study(<http://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sector/brief/smes-finance>).
- IFC, Jobs Study: Assessing Private Sector Contributions to Job Creation and Poverty Reduction (2013)
- https://www.ifc.org/wps/wcm/connect/0fe6e2804e2c0a8f8d3bad7a9dd66321/IFC_FULL+JOB+STUDY+REPORT_JAN2013_FINAL.pdf?MOD=AJPERES
- European Commission's Annual report on European SMEs 2015/16: SME recovery continues(https://ec.europa.eu/jrc/sites/jrcsh/files/annual_report_-_eu_smes_2015-16.pdf).
- Association of Enterprise Opportunity (AEO), Bigger than you think: The Economic Impact of Micro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2014)
- (<http://microenterprisealabama.org/wp-content/uploads/2014/09/Bigger-Than-You-Think-The-Economic-Impact-of-Microbusiness-in-the-United-States-copy.pdf>).
- P. Manawanitkul, Enabling Environment for Microbusiness – ASEAN Experience, Presentation delivered at th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Enabling Environment for Microbusiness and Creative Economy”, organized by UNCITRAL,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Oct. 14 - 15, 2013).
- African Development Group News and Events page, The AfDB SME Program Approval: Boosting Inclusive Growth in Africa (2013)
- www.afdb.org/en/news-and-events/article/the-afdb-sme-program-approval-boosting-inclusive-growth-in-africa-12135.
- K. Kushnir, M. L. Mirmulstein and R. Ramalho,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ound the world: How many are there, and what affects their count?, World Bank/IFC (2010).

www.oas.org

www.informeavina2008.org/english/develop_case2_SP.shtml

www.apec.org/Groups/SOM-Steering-Committee-on-Economic-and-Technical-Cooperation/Working-Groups/Small-and-Medium-Enterprises.aspx

http://www.UNCITRAL.org/UNCITRAL/UNCITRAL_texts/electronic_commerce.html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첨부자료

[첨부자료] 입법지침안 조문 등 정리

용어의 정의 (WP 109 para.16 기준³⁹⁰⁾)

- 연간 회계보고서(Annual accounts): 사업연도 말에 작성되는 사업활동에 관한 재무정보
- 지점(Branch): 사업이 설립된 곳 또는 그밖의 국내외의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 상호(Business name): 해당 사업을 대표하여 등록된 명칭
- 상업등기청 또는 상업등기 시스템(Business registry or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령하고, 저장하고 대중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의 시스템. 이는 세무등록, 사회보장등록 등 다른 공적기관에 사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과 구별된다.
- 등기폐쇄(Deregistration): 사업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음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
-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데이터 메시지 내에 또는 이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자형태의 데이터. 이는 데이터 메시지에 관해 서명자를 식별하고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 있는(Good quality and reliable): 상업등기 시스템과 여기에 등기된 정보는 등기 정보가 가능한 한 최신이고 정확하게(current and accurate) 유지되고, 시스템이 그 운영과 안정성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 있다’는 것이 그 정보가 등기, 등기관, 등기된 사업 또는 제3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390) 제30차 회의에서는 WP109의 구체적 표현을 다소 수정하였는바,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정보통신기술(ICT): 정보와 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상품(Information products): 이용신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전자적 또는 종이 형태로) 상업등기청에 의해 처리되거나 공개되는 정보
-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 정보상품을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상업등기청에 의해 설정된 시스템
- 법(Law): 해당 국가의 적용가능한 법으로서, (입법 또는 행정규칙,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을 불문하고) 상업등기청을 창설하기 위해 도입된 특정한 규정들과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업등기청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포괄적인 국내법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 제도권 경제(Legally regulated economy): 국가가 규율하는 법적, 규제적 체제 내에서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 위 영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영리활동(이는 종종 제도권외 경제라고 불린다)이나 상품, 용역에 관한 불법적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규모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상업등기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 원스톱 샵(One-stop shop): 사업이 제도권 경제에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등록(최소한 세무등록, 사회보장등록 뿐 아니라 상업등기 포함)에 관해 복수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 사무실, 전자적 플랫폼의 단일 인터페이스 또는 조직. 원스톱 샵은 등록이 필요한 모든 공적 기관들 사이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관들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신청양식 및 결제방식 이용 뿐 아니라 이러한 공적기관들 사이의 사업에 관한 정보의 동시공유를 허용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Periodic returns): 매년 또는 달리 정한 기간마다 작성되는 사업의 구성, 활동 및 재무정보를 담은 문건. 등기된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이를 담당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보호정보(Protected data):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
- 등록된 사업(Registered business):登記신청에 따라 공적으로 상업등록청에 등록된 사업
- 등록된 정보(Registered information):登記청에 제출된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정보와 대중에 공개될 정보를 포함한다.
- 登記신청인(Registrant):登記청에 기재된 신청양식과 추가적인 문서를 제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登記관(Registrar):登記청의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
- 고유 登記번호(Unique identifier): 한번만 사업에 배정되고 국가의 공적기관에 의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숫자에 의한 또는 글자와 숫자가 결합된) 일련의 기호(characters)

입법지침안 조문 (WP 109 기준³⁹¹⁾)

제1장 상업등기청의 목적(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y):

제1조 상업등기청의 목적

법은 사업에 필요할 수 있고 상업등기, 세무등록, 사회보장 그밖의 공적등록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모든 등록시스템의 일부로서 제도권 경제(legally regulated economy)내 사업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업등기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 상업등기청의 목표

법은 상업등기청이 다음 목표를 위해 설립됨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주체성(identity) 부여; 그리고
- (b) 등록된 사업에 관한 정보의 수령, 저장 및 대중의 접근허용

제3조 모든 사업에 등기를 허용하는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구조

법은

- (a) 상업등기청을 규율하는 단순한 규칙체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예외 또는 재량의 부여를 지양하여야 하고,
- (b)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상업등기를 하는 소규모기업이 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절차만을 밟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상업등기 시스템의 주요 특성.

법은 상업등기 시스템이 다음의 주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규정해야 한다.

- (a) 등기는 일반이 접근가능하고, 단순하며, 사용자 편의적(user-friendly)이고 시간 및 비용 효율적(time- and cost- efficient)이다
- (b) 등기방식은 소규모기업의 수요에 부합한다.
- (c) 일반에 이용가능한 등기사업정보는 쉽게 검색가능(searchable and retrievable)하다;

391) 제30차 회의에서는 WP109의 입법지침안의 일부 수정하였는바,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그리고

- (d) 등기시스템과 등기된 정보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있으며(good quality and reliable), 주기적 업데이트 및 시스템 확인을 통해 유지된다.

제2장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y)

제5조 권한 있는 등기기관

법은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상업등기청은 국가 또는 국가에 의해 지정된 기관(authority)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 (b) 국가는 상업등기청에 관한 권한(competence)을 계속 갖는다.

제6조 등기관의 지정 및 책임성

법은,

- (a) [국가 또는 관련법이 권한을 부여한 자]에게 등기관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 등기관의 업무수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 (b) 등기관의 권한 및 의무와 이러한 권한 및 의무가 위임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상업등기 운영의 투명성

법은 등기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업등기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칙, 절차, 서비스 기준(service standard)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표준 등기양식 이용

법은 상업등기를 위해 도입된 간단한 표준양식을 규정해야 하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자에게 위 양식의 기재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상업등기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법은 상업등기 담당자들의 요청받은 서비스 수행능력 뿐 아니라 상업등기절차, 서비스 기준 및 전자등기부의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발전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업등기청의 주요 기능

법은 다음을 포함하여 상업등기청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등기
- (b) 상업등기청이 수집한 관련정보에 대해 대중의 접근 부여
- (c) 등기된 사업에 고유 등기번호 배정
- (d) 필요한 공적기관 사이에서의 정보 공유
- (e) 상업등기청이 보유하는 정보를 가능한한 최신으로 유지
- (f) 등기부상 정보의 완결성(integrity)을 보호
- (g) 사업의 의무와 책임, 상업등기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정보의 법적 효력을 포함하여 사업 설립에 관한 정보의 공지; 그리고
- (h)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사업자가 상호를 탐색하고 예약(reserve)하도록 조력

제11조 정보의 저장과 등기부를 통한 접근

법은 등기신청자 또는 등기된 사업으로부터 수령한 정보 또는 등기담당자에 의해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며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상호연결된 등기 시스템(interconnected registry system)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3장 상업등기청의 운용(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y)**제12조 전자, 서면 또는 혼합형 등기**

법은 효율적 상업등기의 최적수단은 전자적인 것임을 규정해야 한다. 만약 전자적 서비스의 전면도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접근은 현재 해당국의 기술인프라 및 제도적 시스템과 법제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실행되어야 하고, 인프라 발전에 따라 확장되어야 한다.

제13조 전자문서와 전자인증수단

법은

- (a)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다른 동등한 인식수단의 사용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하고,
- (b)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유효성과 집행가능성이 부인될 수 없고 이들이 종이문서 등 이에 대응되는 것과 기능적으로 동등하다는 원칙에 의하여 위 사용을 규율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업등기 및 다른 기관에의 등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법은 단일 인터페이스(single interface) 기능을 관장하는 공적기관 지정을 포함하여 상업등기 및 다른 기관에의 등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 (a) 전자적 플랫폼 또는 실제 사무실로 구성될 수 있고,
- (b) 상업등기청, 과세기관, 사회보장기관 등을 포함하여 동일 정보를 요구하는 최대한 많은 공적기관들의 서비스를 통합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유 등기번호 이용

법은 각 등기된 사업에 고유 등기번호가 배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고유 등기번호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a) 등기번호는 일련의 숫자에 의한(numeric) 또는 글자와 숫자가 결합된(alphanumeric) 기호(character)로 구성되어야 한다.
- (b) 등기번호는 이를 부여받은 사업에 고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 (c) 등기번호는 변경불가능하고 관련 사업이 폐쇄된 이후에도 재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고유 등기번호의 배정

법은 상업등기청이 상업등기 시에 또는 지정된 기관이 등록 이전에 고유 등기번호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발급된 고유 등기번호는 해당 등기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공적 기관들 사이에서 이용가능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공적 의사소통에 이용되어야 한다.

제17조 고유 등기번호의 실행

법은 고유 등기번호 이용 시스템을 도입할 때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상업등기청 및 고유 등기번호와 연결된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공적 기관들의 기술적인 인프라들 사이에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있다; 그리고
- (b) 기존 인식번호는 고유 등기번호에 연결된다.

제18조 공적기관간 보호정보의 공유

법은 고유 등기번호 체제 하에서 공적기관간 보호정보 공유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

- (a) 규칙은 공적기관간 보호정보 공유 관련 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 (b) 규칙은 공적기관으로 하여금 그 법령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보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 (c) 규칙은 공적기관으로 하여금 그가 법령상의 권한을 갖는 사업에 대하여만 보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의 등기(Registration of Business)**제19조 등기방법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성**

법은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절차 및 관련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도록 하고, 쉽게 검색가능하도록 하고, 무료이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20조 등기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사업

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모든 크기 및 형태의 사업체가 등기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 (b) 필수적으로 등기가 요구되는 사업체의 형태

제21조 등기에 필요한 최소정보

법은 적어도 아래 사항은 포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첨부서류의 최소한 요

건을 설정해야 한다.

- (a) 상호
- (b) 사업이 연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소 또는 만약 그 사업이 일반적 주소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지리적 위치의 정확한 기술
- (c) 등기신청자의 인적 사항
- (d) 사업을 대표하여 서명할 권한을 갖는 자(들) 또는 사업의 법적 대표자(들)의 인적 사항; 그리고
- (e) 등기되는 사업의 법적 형태와 만약 이미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던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

제22조 정보가 제출되는 언어

법은 상업등기청에 제출되는 정보 및 문서가 특정된 언어(들)에 의해 표시되고 상업등기청이 결정하고 공고한 문자(character)에 의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등기통지

법은 상업등기청으로 하여금 가능한 빨리 어느 경우에도 부당한 지연 없이 등기신청인에게 사업의 등기가 유효한지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등기통지의 내용

법은 등기통지가 증명, 고지 또는 카드의 형태에 의할 수 있으며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a) 사업의 고유번호
- (b) 등기일자
- (c) 상호
- (d) 조직의 법적 형태; 그리고
- (e) 사업의 준거법

제25조 등기의 유효기간

법은 등기가 사업폐쇄 시까지 유효함을 규정해야 한다.

제26조 등기의 시기 및 유효성

법은

- (a) 상업등기청으로 하여금 등기 신청이 접수된 일시를 기록하도록 하고, 가능한 빨리 어느 경우에도 부당한 지연 없이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b) 사업의 등기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 (c) 등기가 등기부에 가능한 빨리 어느 경우에도 부당한 지연 없이 기재되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제27조 등기신청의 각하

법은 등기관에 관하여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각하해야 한다.
- (b) 등기관은 등기신청 각하시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서 각하사유를 알려야 한다.
- (c) 법령에 그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등기관은 스스로의 오류 및 등기신청서류상 정보의 부수적 오류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 [(d) 등기관은 실제적 사유에 근거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할 권한이 없다.]

제28조 지점등기

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지점등기가 의무적인지 아니면 허용되는지 여부
- (b) 다른 법조항의 정의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법등기상 지점의 정의; 그리고
- (c) 지점등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 (i) 지점이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는 경우
 - (ii) 다음을 포함하는 공개의 요건: 등기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지점의 이름과 주소; 지점 등기를 구하는 원래의 사업 또는 주된 사업조직의 법적 형태; 국가 또는 다른 관할기관이 발행한 원래의 사업 또는 주된 사업조직에 관한 설립증명서(*proof of existence*); 그리고
 - (iii) 법적으로 지점을 대표하는 자(들)에 관한 정보

제5장 등기 이후의 절차(Post Registration)

제29조 등기 이후 추가등기 대상정보

법은 등기된 사업이 등기 이후에 상업등기청에 적어도 다음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a) 최초로 등기할 당시 권고안 제21조에 의해 요구되었던 정보의 변경이나 수정 및
- (b)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회계보고(annual accounts) 등 정기보고서(periodic return)

제30조 현상황 등기의 유지

법은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청에 등기된 정보가 현상을 반영하도록 다음 사항 등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 (a) 등기된 사업에게 상업등기청에 등기된 정보가 계속 정확한지 보고하도록 촉진하고 어떠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리는 자동화된 요청을 보냄
- (b) 필요한 업데이트에 관한 공지를 상업등기청 사무실 및 지점에 게시하고, 상업등기청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전국 또는 지역단위 전자 또는 인쇄매체에 이를 정기적으로 알림
- (c) 등기의 현재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등기된 사업에 관한 정보 자료들을 특정함; 그리고
- (d) 등기된 사항의 변경을 접수한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지연 없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등기를 업데이트 함

제31조 등기된 정보의 수정

법은

- (a) 상업등기청으로 하여금 (i) 변경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경등기를 실행하도록 하고, (ii) 변경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날짜 및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iii) 부당지연 없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변경등기 신청자에게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음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 (b) 등기된 정보에 대한 변경등기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6장 접근성 및 정보 공유(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

제32조 상업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의 상업등기 서비스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제33조 대중의 정보접근 가능성

법은 모든 등기된 정보가 달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대중에 완전히 또한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정보의 비공개

상업등기청에 등기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법은,

- (a) 등기 사업에 대한 어떤 정보가 보호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지 밝히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일반에 공개될 수 없는 정보 유형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 (b) 등기관이 어떠한 요건 하에 비밀성에 의해 공개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운영시간

법은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상업등기 서비스에의 접근이 전자적으로 제공된다면 이러한 접근은 항상 가능하다.
- (b) 상업등기 서비스에의 접근이 실제 사무실에서 제공된다면,
 - (i) 각 사무실은 일반에게 [각국이 정하는 일시] 동안에 열려 있다; 그리고
 - (ii) 각 사무실의 위치 및 운영시간에 관한 정보는 만약 상업등기청 웹사이트에 있으면 그 웹사이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널리 공지되며, 각 사무실에는 운영시간이 게시되어 있다.
- (c) 위 (a), (b)에도 불구하고 상업등기청은 다음 조건 하에서 유지, 보수작업을 위하여 등기서비스에의 접근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 (i) 등기서비스 중지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함
 - (ii) 중지사실 및 예상기간은 넓게 공지되어야 함; 그리고
 - (iii) 이러한 공지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중지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루어져야 함

제36조 등기신청, 등기사항 수정을 위한 직접적인 전자적 접근

법은 관련법령의 범위 하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한 경우, 상업등기청에 등기관 또는 신청자가 출석할 필요 없이 상업등기신청 및 등기된 사업정보 수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37조 등기검색을 위한 직접적인 전자적 접근

법은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한 경우, 상업등기청에 신청자가 출석할 필요 없이 또한 상업등기청 직원의 도움 없이 등기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정보접근성 향상

법은 다음과 같은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등기된 사업에 관한 공개정보에의 접근은 촉진하여야 한다: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부과; 정보서비스 이용자에게 등록 요구 내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요구

제39조 등기된 정보에의 국제적 접근

법은 상업등기 시스템이 등기부상 공개정보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을 촉진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수수료(Fee)

제40조 등기서비스에 관한 수수료

법은 등기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도 상업등기(특히 소규모기업의 상업등기)를 촉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등기가 등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41조 등기된 정보에 관한 수수료

법은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 (a)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는 일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 (b) 상업등기청에 의해 더 많은 처리절차가 필요한 정보서비스의 경우 그 요청된 정보 상품(information product)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를 받고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

제42조 수수료 금액 및 지불방법의 공개,

법은 등기 및 정보제공서비스에 관하여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가 있다면 그 내용 및 지불방식이 널리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전자적 지급

법은 전자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장 책임 및 제재(Liability and Sanction)**제44조 오도하거나, 잘못되거나, 기만적 정보에 관한 책임**

법은 상업등기청에 의해 제공된 오도하거나(misleading), 잘못되거나(false) 기만적(deceptive)인 정보 또는 필요정보 누락에 대한 적절한 책임에 관해 규정하여야 한다.

제45조 제재

법은

- (a) 정시에 정확하게 상업등기청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적절한 제재를 규정하여야 한다.
- (b) 일정 기간 내에 의무불이행이 보정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 (c)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 규정들을 널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상업등기청의 책임

법은 상업등기청의 상업등기 또는 등기제도의 관리 내지 운영에 관한 잘못 또는 과실(error or negligence)로 인해 초래된 손실이나 손해(loss or damage)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지 규정하여야 한다.

제9장 등기폐쇄(Deregistration)**제47조 임의폐쇄**

법은

- (a) 사업이 등기폐쇄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 (b)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폐쇄하도록 해야 하고,
- (c) 소규모기업의 등기폐쇄에 관하여는 간이한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8조 강제폐쇄

법은 등기관이 등기폐쇄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9조 폐쇄절차와 폐쇄의 시기 및 효력

법은

- (a) 등기된 사업에 대하여 등기폐쇄가 문서로 통지됨을 규정해야 하고,
- (b)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에 따라 등기폐쇄가 공고됨을 규정해야 하고,
- (c) 등기폐쇄가 언제 효력을 발하는지 명시해야 하고,
- (d) 등기폐쇄의 법적 효력을 명시해야 한다.

제50조 폐쇄의 복원

법은 등기관이 폐쇄등기한 사업을 복원해야 하는 요건 및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장 기록보존(Preservation of Records)

제51조 기록보존

법은 폐쇄등기된 사업정보를 포함하여 등기신청자 및 등기사업에 의해 제출된 문서 및 정보가 등기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검색될 수 있도록 등기청에 보존되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제52조 정보의 수정 및 삭제

법은 법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을 규정해야 한다.

제53조 상업등기기록의 멸실 및 훼손방지

법은

- (a)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기록을 멸실,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해야 하고,
- (b) 등기기록의 재건을 가능하게 하는 백업장치를 구축하여 유지해야 한다.

제54조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부터의 안전장치

법은 전자 또는 종이방식 상업등기부에 포함된 정보의 처리, 수집, 이전 및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밖의 사고로부터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8-18-②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UNCITRAL Working Group I 소규모 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2018년 7월 12일 인쇄
2018년 7월 15일 발행

발행인 | 이익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8,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836-2 93360

저자명

노 혁 준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실적 및 논문

전자증권법의 상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주식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016년 회사법 중요판례

주주 지위의 변동과 회사소송의 원고 적격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UNCITRAL Working Group I 소규모 기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978-89-6684-836-2

값 8,000원